

30-1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계획

2006.

통 계 청

I.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개선배경

1. 2000년 조사구 설정현황

- 조사구설정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본청에서는 심사를 담당
 - 기능 전환된 읍·면·동은 시·군·구에서 설정
- 행정 읍·면·동별로 우리나라 전지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설정
- 인구주택조사구중 특성이 아파트(특성:A), 보통(특성:1), 섬(특성:2) 조사구를 대상으로 설정
- 1개 조사구당 농어가수 80 ± 20 호 범위 내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적정하게 설정
 - 인구주택조사구를 2개 이상 묶을 경우는 반드시 인접된 조사구를 연결하여 설정

2. 조사구 설정방법 개선의 필요성

- 농림어업 조사구설정 시기가 2005 인구주택총조사 입력기간과 중복되어 총조사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조사구설정을 읍·면·동에서 할 경우 설정시기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완료되는 11월 20일 이후에야 가능
 - 2000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시기보다 1개월 조기 실시되는 이번 총조사의 경우 일정이 촉박함.
- 읍·면·동 직원의 업무부담 과중이 우려되고, 통계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구 설정의 정도가 저하될 수 있음.
 - 통계기능 전환지역이 많아, 조사구 설정에 동원 가능한 인력이 부족
- 조사지역이 넓고 산재되어, 조사시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이 많아 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 2000년의 경우 92.5%가 인구주택조사구가 2개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3개 이상으로 설정된 조사구도 43.4%임.
-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읍면동의 조사구 설정 업무경감을 위해 농림어업 조사구 설정방법 개선이 필요함.

II. 2005년 조사구 설정방법 개선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농가·임가·어가를 포함한 개념의 새로운 통합조사구로 설정
 - 조사구 설정체계를 개선하여 조사구 설정을 통계청에서 전담
 - 조사구설정 시기를 2000년 조사보다 앞당겨 조기실시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가급적 일치하도록 조사구내 대상 가구를 하향조정
 - 조사구설정 전산관리프로그램 개발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향상
-
- 농가·임가·어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조사구로 설정
 - 임업총조사 업무이관에 따라 종전의 농·어가 통합 조사구에서 임가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조사구로 설정
 - 조사구 설정체계를 개선하여, 조사구 설정을 본청에서 전담
 - 지자체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구설정의 정도를 높임.
 - 조사구설정 시기를 2000년 조사보다 앞당겨 조기실시
 - 2005 인구주택조사구별로 과거 총조사 농어가수를 출력한 목록을 토대로 조사구를 설정
 - 추후 조사구별로 새로 조사된 농어가수와 증감규모를 고려하여 조사구를 재조정
 - 조사구의 대상가구 기준을 농어가수 규모 80 ± 20 호에서 40 ± 10 호로 하향 조정하여, 인구주택과 농림어업조사구가 가급적 일치하도록 설정
 - 조사원의 조사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조사능률 향상 도모
 - 조사구의 경계확인 및 조사대상 가구 파악이 용이
 - 인구주택과 농림어업조사구 일치율을 7.5%에서 59.9%로 높임.
 - 조사구설정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향상
 - 조사구별로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농어가수와 비교하여 2005 농림어업조사구를 신속하게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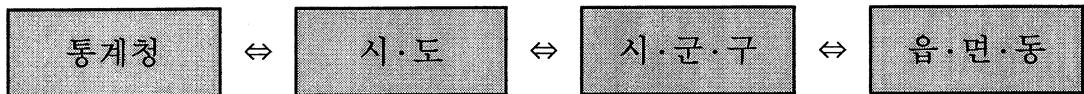
III.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개요

1. 설정 목적

- 조사대상 가구의 중복·누락 방지
- 조사원별 담당구역을 명확히 하고, 업무량을 형평성 있게 부여
- 농림어업과 관련한 소지역 통계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설정 시기 : 2005. 7. ~ 2006. 1.

3. 설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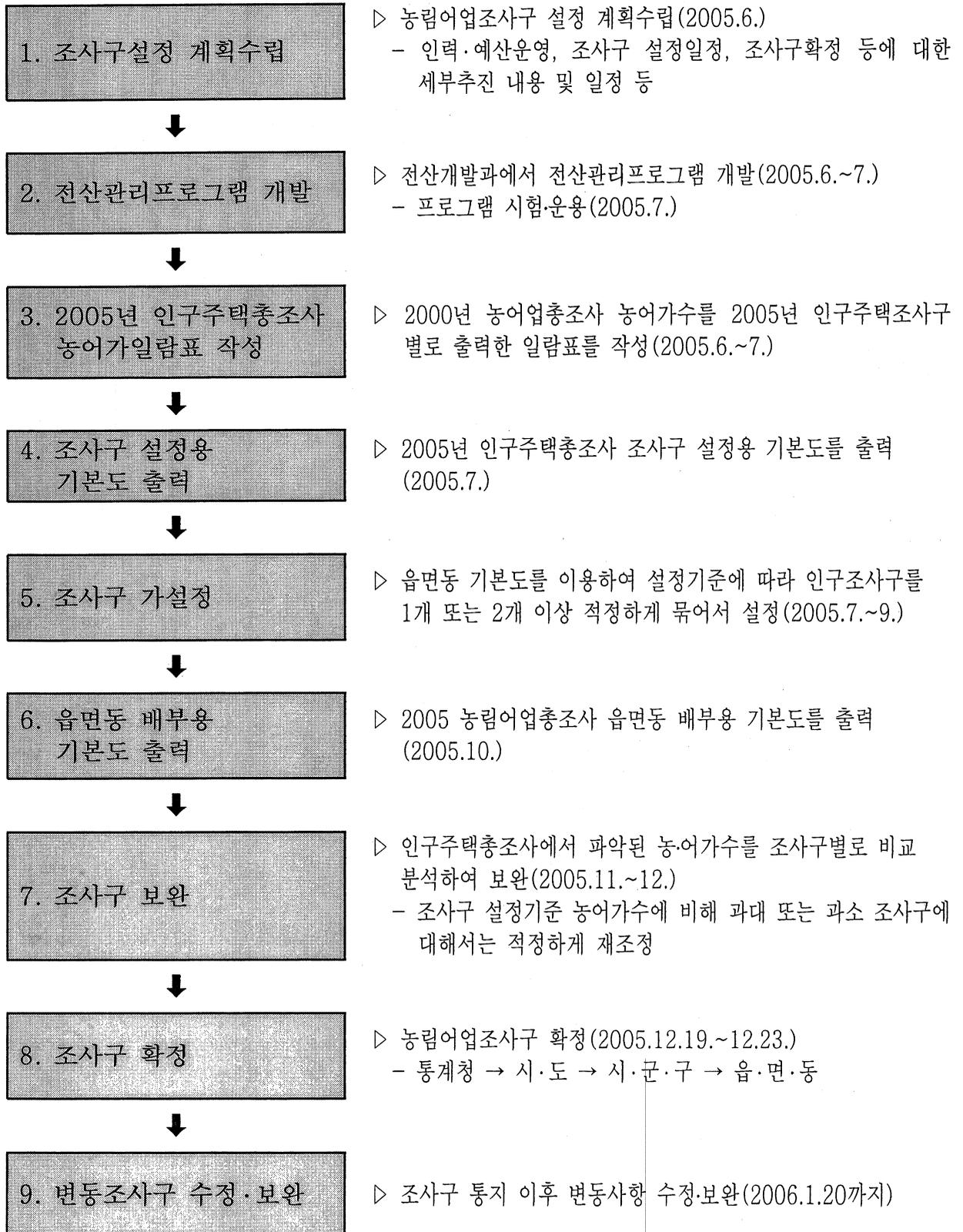


4. 기관별 추진사항

기관명	담당사항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조사구 설정 계획수립 ○ 지침서 작성 ○ 조사구 설정 및 확정 ○ 설정된 조사구의 관리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의 지도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구설정 적합성 및 경계 확인 ○ 시·군·구에 변동 조사구 수정 요청 및 보완 ○ 각종 조사표류에 농림어업조사구를 표시

5. 조사구설정 소요예산 : 81,440천원
- 2005년 확보예산 : 481,922천원
 - 2005년 예산절감 : 400,482천원

IV. 주요 업무흐름도



V. 세부 추진 계획

1. 조사구설정 관리프로그램 개발(2005. 6.~7.)

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어가일람표 작성(2005. 6.~7.)

가) 2000년 농어업총조사 농어가일람표 작성(2005. 6.)

- 2000년 농어업총조사 농어가수를 인구주택조사구를 기준으로 재정리

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어가일람표 작성(2005. 6.~7.)

- 2000년 농어업총조사 농어가일람표에 정리된 농어가수를 2005 인구주택조사구를 기준으로 재출력하여 일람표를 작성

3.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출력(2005. 7.)

- 지형지물이 생략된 A3 양식의 기본도를 출력하여 사용
- 세부 지형지물 확인은 CAD와 기 출력된 기본도를 활용

4. 조사구 가설정(2005. 7.~9.)

가) 일용직 채용(2005. 6.)

- 일용직 10명 3개월 채용
- $64,158(\text{조사구}) \div \{ 1(\text{명}) \times 75(\text{조사구}) \times 90(\text{일}) \} \approx 9.5(\text{명})$

나) 읍면동 기본도에 조사구별 농어가수 기입

다) 조사구 가설정

- 읍면동 기본도를 이용하여 조사구 설정방법에 따라 인구주택조사구가 1개 또는 2개 이상 연결이 되도록 적정하게 묶어 설정

라) 가설정 결과를 조사구설정 전산관리프로그램에 입력 및 관리

5. 농림어업총조사 읍면동 배부용 기본도 출력(2005. 10.)

6. 조사구 보완(2005. 11.~12.)

- 가설정된 조사구별 농어가수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파악된 농어가수를 비교하여, 농어가 규모 차이가 큰 조사구에 대해 보완

7. 조사구 확정(2005. 12.)

- 통지기간 : 2005. 12. 19.~12. 24. 기간중
 - 통계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농림어업총조사 읍면동 기본도 및 조사구설정 지침서 송부
- 읍·면·동에서는 각종 조사표류에 확정된 농림어업조사구를 표시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를 농림어업조사구별로 재편철한 후 농림어업조사구 번호를 표시

8. 변동조사구 수정 보고 및 보완(2006. 1.)

- 조사구 경계가 부적합하거나 기타 조사구 설정에 문제점이 발견된 조사구의 경우 통계청으로 조사구 변경을 요청
- 조사구 설정 이후 본조사 직전(2006. 1. 20.)까지 행정구역 경계의 변동이 생기거나, 거처의 신축, 철거 등으로 농어가수의 현저한 증감이 있어 조사구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통계청에 조사구 수정을 요청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 수정보고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완
 - 조사구 설정이 부적합한 조사구와 변동 조사구에 대하여 검토 후 보완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결과를 통보

(붙임)

【 조사구설정 총소요경비 산출내역 】

□ 조사구설정 총소요경비 : 81,440(천원)

○ 본청 조사구설정 업무보조원

$$28,85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90(\text{일}) \times 1.064 = 27,627(\text{천원})$$

※ 인력산출내역

$$64,158 \div \{ 1(\text{명}) \times 75(\text{조사구}) \times 90(\text{일}) \} \approx 9.5(\text{명})$$

○ 본청 조사구심사 업무보조원

$$28,850(\text{원}) \times 5(\text{명}) \times 90(\text{일}) \times 1.064 = 13,813(\text{천원})$$

○ 읍면동 배부용 기본도 출력 : 40,000(천원)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관리프로그램

1. 로그인 화면

화면1	Log In 화면 구성				
<table border="1"><tr><td>ID</td><td></td></tr><tr><td>PASS</td><td></td></tr></table>		ID		PASS	
ID					
PASS					
<table border="1"><tr><td>실행하기</td><td>종료하기</td></tr></table>		실행하기	종료하기		
실행하기	종료하기				

화면2	행정구역 선택 화면 구성				
<table border="1"><tr><td>행정구역</td><td></td></tr><tr><td>조사구</td><td></td></tr></table>		행정구역		조사구	
행정구역					
조사구					
<table border="1"><tr><td>선택</td><td>취소</td></tr></table>		선택	취소		
선택	취소				
<p>▶ 행정구역 - 전국, 시군구, 읍면동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p> <p>▶ 조사구 - 조사구선택은 옵션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허용 가능하도록 구성</p>					

2. 메뉴화면

화면3	메뉴 화면 구성		
관리 (X)	조사구설정 (J)	조사구검색 (F)	집 계 (S)
담당자관리(a)	조사구설정(a)	조사구설정 현황(a)	읍면동(a)
진척율(b)	읍면동 40가구이상(b)	농어가수 검토(b)	시군구(b)
종료(x)	조사구 40가구이상(c)	인구조사구 검토(c)	시도별(c)
	조사구 40가구미만(d)	조사구설정 검토(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키 사용가능하도록 구성 ▶ 담당자 관리 : 담당자 id 부여 및 업무량 배정 ▶ 조사구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구설정현황, 농어가수검토, 인구조사구검토, 조사구설정현황 각각 부메뉴에 조사구설정과, 인구주택총조사 2개 부메뉴 설정 			

화면4	진척율(b) 출력화면 구성		
시 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완료	미완료	진척율	완료
미완료	진척율	완료	미완료
진척율	완료	미완료	진척율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완료 유무	작업스케줄		
					완료예정일	조정예정일	ME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별 진척율 출력화면 - 진척율 = $\frac{\text{설정완료조사구수(읍면동,시군구,시도)수}}{\text{전체조사구수(읍면동,시군구,시도)}}$
--

3. 조사구설정 화면

화면5	조사구설정(a) 화면 구성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 구 조사구수	가구수	농림어가수				농림어업총조사 조 사 구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21	090	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인 구 조사구	통리	가구수	농림어가수 현황				비 고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 농림어업총조사조사구 : 설정할 조사구번호 입력(중복이나 누락 불허)
▶ 인구조사구~농림어가수 현황
- 인구조사구를 선택이나 입력하면 나머지는 기본자료에서 자동 출력
- 인구조사구는 중복이나 누락을 불허

화면6	읍면동 40가구 이상(b) 출력화면 구성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주택 조사구수	농림어가수 현황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주택 조사구수	농림어가수 현황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 읍면동 당 농림어가수 40가구 이하 조사구 현황을 출력

화면7

조사구당 40가구 이상(c) 출력화면 구성

시도수	시군구수	읍면동수	인구주택 조사구수	농림어가수 현황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주택 조사구수	농림어가수 현황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 ▶ 조사구 당 농림어가수 40가구 이상 조사구 현황을 출력
- 조사구 설정이 필요없는 조사구 현황임

화면8

조사구당 40가구 미만(d) 출력화면 구성

시도수	시군구수	읍면동수	인구주택 조사구수	농림어가수 현황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주택 조사구수	농림어가수 현황			
				계	농가수	어가수	
						해수면	내수면

- ▶ 조사구 당 농림어가수 40가구 미만 조사구 현황 출력
- 조사구 설정 대상 조사구 현황임

4. 조사구검색 화면

화면9 조사구설정 현황(a) 화면 구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림어업 조사구수	인구주택 조사구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농림어업 조사구	인구주택 조사구	조사구 설정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 조사구 설정 현황 출력

화면10 농어가수 검토(b) 화면 구성

검색		계	30미만	51이상
----	--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림어업 조사구수	인구주택 조사구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농림어업 조사구	인구주택 조사구	조사구 설정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 검색 : [조사구설정 농어가수 계], [인구주택총조사 농어가수 계] 중 선택 후
서브 선택 메뉴로 [계], [30미만], [51이상] 중 선택으로 조합하여 검색

화면11 인구조사구 검토 화면 구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림어업 조사구수	인구주택 조사구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농림어업 조사구	인구주택 조사구	조사구 설정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 인구조사구 중복, 누락 및 인구주택 특성번호 A, 1, 2 이외의 조사구가 조사구 설정 포함된 조사구 현황 출력

화면12 조사구설정 검토 화면 구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림어업 조사구수	인구주택 조사구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조사구 설정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농림어업 조사구	인구주택 조사구	조사구 설정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	농어가수			가구수	농어가수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 농림어업조사구 번호가 중복, 누락된 조사구 현황 출력

화면13

읍면동 집계 화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가구수	농어가수	농어가수별 조사구수												
					계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101	

농림어업 조사구 번호	인구주택 조사구수	가구수	농어가수	농어가수별 조사구수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101			

- ▶ 읍면동 집계
- ▶ 규모별 조사구수 현황

화면14

시군구 집계 화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가구수	농어가수	농어가수별 조사구수												
					계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101	

읍면동	조사구수	인구주택 조사구수	가구수	농어가수	농어가수별 조사구수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101		

- ▶ 시군구별 집계
- ▶ 규모별 조사구수 현황
- ▶ 읍면동(수)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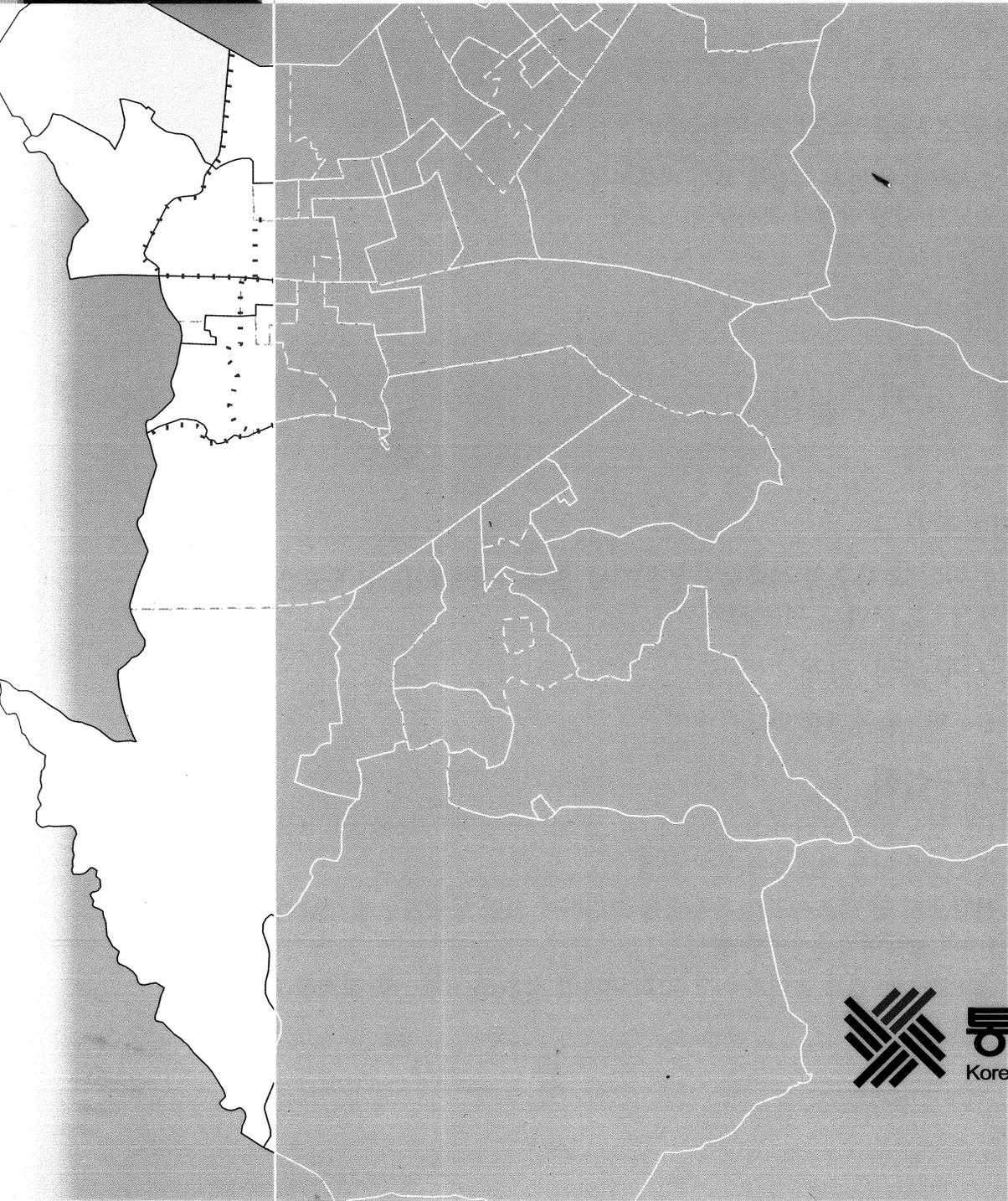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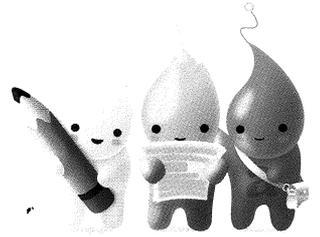
2005
농림어업총조사

30-2

www.acensus.go.kr



2005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관리 지침서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조사구관리 지침서 주요 내용



1~2월중 조사구관련 지자체 주요 업무수행 사항

- ④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2006. 1월중) ⇒ 10쪽 참조
 - 조사구설정 기본도와 조사구목록을 참고하여 조사구설정의 현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조사구에 대하여 수정을 함.
- ④ 조사준비(준비조사 전까지) ⇒ 15쪽 참조
 - 농림어가명부 출력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별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 복사
- ④ 변동조사구 수정·보완(2006.2.1~10까지) ⇒ 18쪽 참조
 - 조사구설정 현지 적합성 확인 이후부터 준비조사 기간까지 조사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시 조사구 변경요청



조사구설정 기준

- ④ 기초조사구
 - 인구주택조사구 중 아파트(특성번호:A), 일반(특성번호:1), 섬(특성번호:2) 조사구로 하며 그 외는 제외
- ④ 조사구설정 경계
 - 읍·면·동 경계를 반드시 유지
- ④ 조사구설정
 - 1개 조사구당 농어가수 40호(40 ± 10) 기준으로 인구주택조사구를 1개 또는 2개 이상 적정하게 묶어 설정
 - 산간오지 및 섬조사구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 농어가수에 미달하여도 1개의 농림어업조사구로 설정
 - 읍·면·동 전체 농어가수가 60호 미만인 경우 읍·면·동 전체를 1개의 조사구로 설정



단계별 조사구설정과정

☉ 통계청 수행사항

I 단계 : 준비작업

- 조사구설정용 GIS 프로그램 개발
- 조사구관리프로그램 개발

II 단계 : 조사구설정용 기본도 출력

- 농어가일람표 작성
- GIS 기본도 작성
- GIS 상에서 2005 조사구경계와 2000 거처 포인트 결합
- 농어가일람표와 거처포인트의 조사구별 결합자료
- GIS 기본도에 농어가수 정보 삽입

III 단계 : 조사구병합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사구 가설정

IV 단계 : 조사구 설정

V 단계 : 조사구 설정 수정 ·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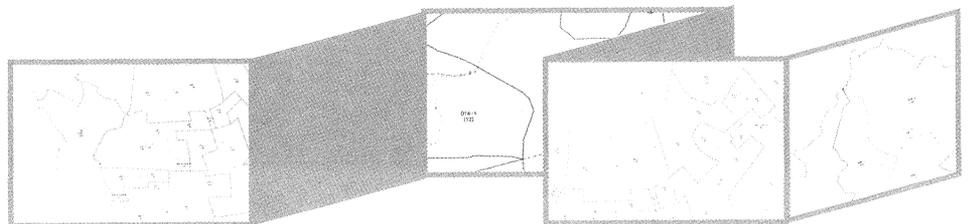
☉ 지자체 수행사항

VI 단계 :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VII 단계 : 조사준비 작업

- 농림어가명부 출력
- 조사구요도 편철

VIII 단계 : 변동조사구 수정 · 보완



05 I. 조사구설정 개요

06 1. 업무 흐름도

07 2. 목적

07 3. 기본방향

07 4. 조사구설정 체계

08 5. 조사구 설정기준

09 II. 지자체 주요업무 수행사항

10 1.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15 2. 조사 준비작업

18 3.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20 III.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21 1. 준비작업

23 2.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출력

29 3. 조사구 설정

33 4. 조사구 설정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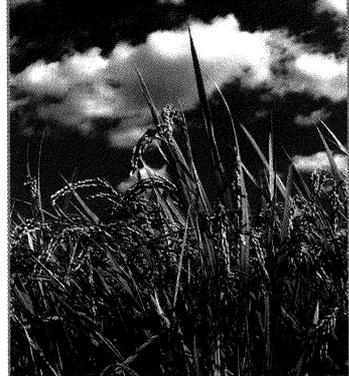
37 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기본도 및 확대도 출력 배부

39 IV. 참고자료

40 1. 인구주택조사구의 종류 및 설정기준

45 2. 거처와 가구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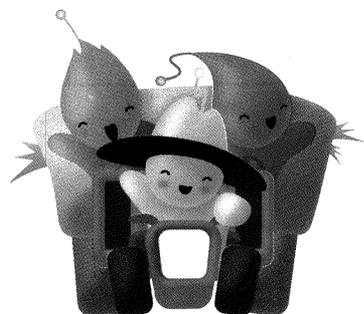
48 3.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연혁



2005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관리 지침서

I. 조사구설정 개요

1. 업무 흐름도
2. 목적
3. 기본방향
4. 조사구설정 체계
5. 조사구 설정기준



1. 업무 흐름도

	업무단계	수행기관	추진일정	업무내용
추진경과	준비작업	통계청	2005. 5. ~7.	▶ 조사구설정용 GIS 프로그램 개발 ▶ 조사구관리프로그램 개발
	↓ ↓ ↓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출력	통계청	2005. 8.	▶ 농어가수 출력 ▶ GIS프로그램을 이용 조사구 가설정
	↓ ↓ ↓			
	조사구 설정	통계청	2005. 9. ~ 11.	▶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위에 농어가 40±10가구 규모로 조사구를 설정
	↓ ↓ ↓			
향후일정	조사구설정 보완	통계청	2005. 12.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농어가수를 조사구별로 비교하여 농어가 기준 규모와 차이가 큰 조사구에 대해 설정 보완
	↓ ↓ ↓			
	기본도 및 확대도 출력·배부	통계청	2005. 12.	▶ 읍면동 배부용 기본도 및 확대도 출력·배부 ▶ 조사관리시스템에 PDF 파일 제공
	↓ ↓ ↓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지자체 (통계청)	2006. 1.	▶ 조사구 적합성 여부 현지 확인 - 조사구경계의 적합성 여부 - 인구조사구의 누락 및 삭제 여부 등 변동사항 반영
	↓ ↓ ↓			
조사구확정	지자체	2006. 1.	▶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완료 후 조사구 확정	
↓ ↓ ↓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지자체 (통계청)	2006. 2.	▶ 조사구 확정 이후 농어가수의 현저한 변동으로 조사구 수정이 불가피한 조사구에 대해 재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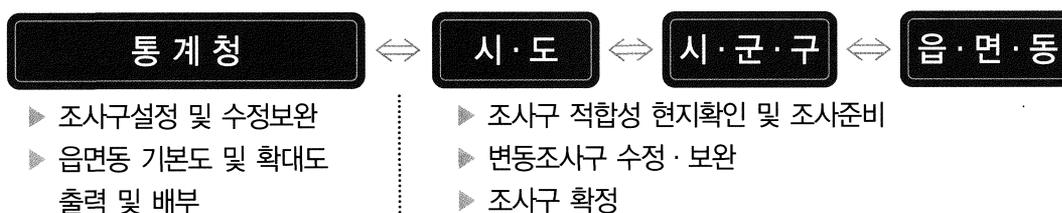
2. 목적

- 조사대상 가구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
- 조사원의 업무량을 형평성 있게 부여
- 농림어업 관련 각종 표본조사에서 표본틀로 제공
- 소지역별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본방향

- 농가·임가·어가를 통합하여 설정
- 1개 조사구당 기준 농어가수를 80 ± 20 호에서 40 ± 10 호로 조정
 - 인구주택조사구와 농림어업조사구가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정
 - 조사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조사능률을 향상
 - 조사구 경계 확인 및 조사대상 가구 파악이 용이
- 조사구설정은 통계청에서, 가설정된 조사구의 적합성 현지 확인을 통한 조사구 확정업무는 지자체에서 각각 분담
 - 지자체의 업무 부담 경감

4. 조사구설정 체계



5. 조사구 설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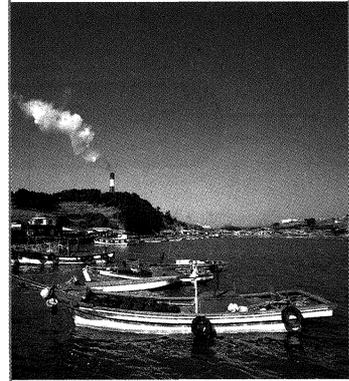
인구주택조사구의 경계는 반드시 유지하며, 농어가 40±10호를 기준으로 1개 또는 2개 이상 조사구가 인접되도록 묶어 설정

♣ 일반원칙

- 행정 읍·면·동별로 전지역이 포함되도록 설정
- 1개 조사구당 농어가수가 40호 기준을 원칙으로 설정
 - 지리적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 농어가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최소 30호, 최대 50호(40±10호)의 범위내에서 설정
- 2005 인구주택조사구의 경계를 유지
 - 이미 설정된 인구주택조사구의 경계는 변경할 수 없음
- 인구주택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 A),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 섬조사구(특성번호 : 2)를 기준 농어가수(40±10호)의 범위 내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을 묶어 설정
 - 인구주택조사구를 2개 이상 묶을 경우는 반드시 조사구가 인접되도록 설정
 - 인구주택조사구 중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 : 3),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 : 4),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특성번호 : 5) 및 특별조사구는 제외

♣ 예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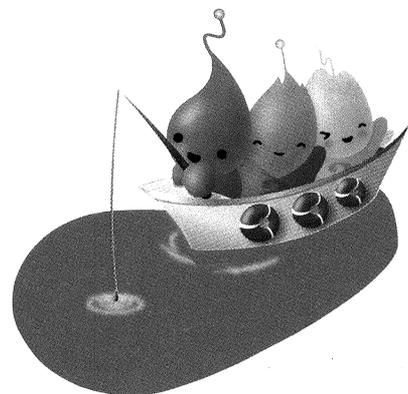
- 산간오지 및 섬조사구는 그 지역의 농어가수를 고려하여 인근 인구주택 조사구를 여러개 인접되도록 묶어 설정하는 것이 원칙
 - 단, 교통이 불편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기준 농어가수에 미달하여도 1개의 농림어업조사구로 설정
- 도시지역의 행정동 전체 농어가수가 60호 미만인 경우 1개 조사구로 설정
 - 단, 전체 농어가수가 60호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하여 설정



2005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관리 지침서

II. 지자체 주요업무 수행사항

1.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2. 조사 준비
3.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일정

-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2006.1.15~30)
 - 조사구설정 기본도와 조사구목록을 참고하여 조사구설정의 현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조사구에 대하여 조사관리시스템에 조사구 변경 신청
- 조사준비(2006.1)
 - 농림어기명부 출력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별 요도 복사·편철
- 변동조사구 수정·보완(2006.2.1~10)
 - 조사구설정 현지 적합성 확인 이후부터 준비조사 기간까지 조사구내 농어가수의 현저한 증감으로 조사구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사관리 시스템에 조사구 변경 신청

1.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조사구설정 기본도와 조사구목록을 참고하여
조사구설정의 현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조사구에 대하여 조사관리시스템에 조사구 변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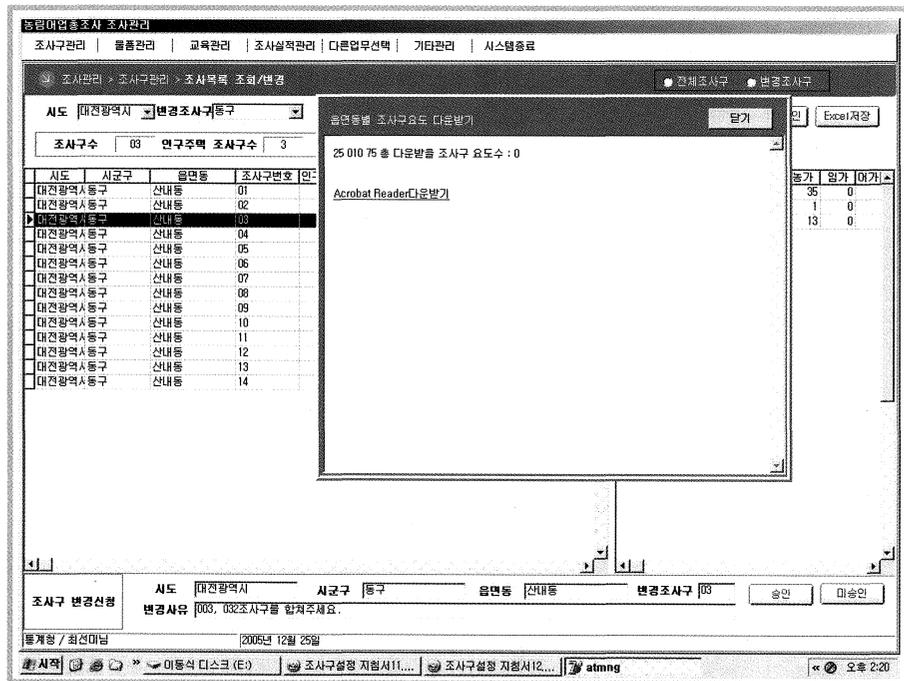
♣ 기간

- 2006년 1월 15일 ~ 30일(15일간)

지자체 주요업무 수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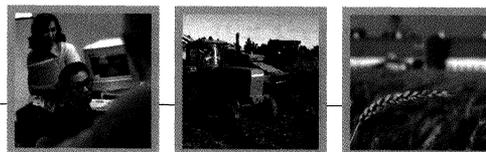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기본도 및 확대도는 A3 규격으로 작성되었으며, 읍·면·동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기본도에는 조사구적합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통리경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농림어업총조사조사구 등 최소정보만 수록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기본도 및 확대도는 A3로 출력되어 해당 읍·면·동에 배부
- 조사관리시스템에서 PDF파일로도 제공되므로 필요에 따라 항상 출력 및 확인가능

[그림 2] 조사관리시스템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나) 인구주택총조사 기본도

-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기본도를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하여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에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 기본도는 11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후 변경 사항을 보완한 자료를 준비(기본도에 미보완된 사항은 보완)
- 인구주택총조사 기본도에는 행정구역경계, 통·리경계, 조사구경계, 지형지물 등 상세 정보가 실려있으므로 조사구적합성 현지 확인 시 반드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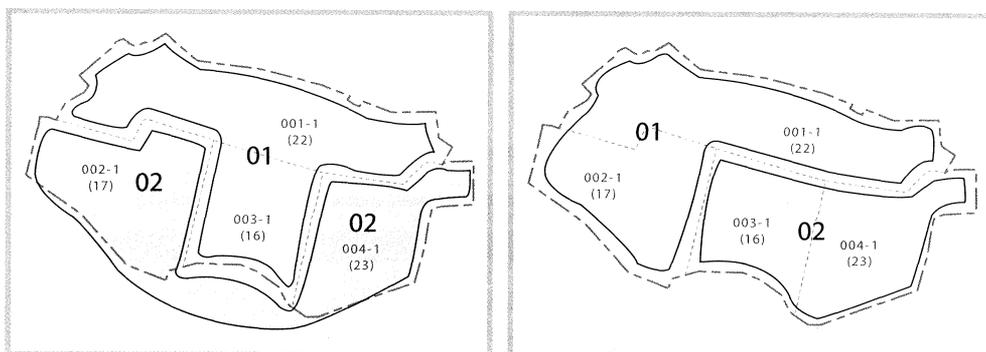
♣ 확인방법

- 배부된 조사구설정 기본도와 조사구목록을 기본으로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기본도와 비교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조사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 때 특히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구를 수정·보완한 적이 있는 조사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인구주택조사구 중 특성번호가 A, 1, 2 이외 지역은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한다.

》》 인구주택조사구가 서로 인접되지 않고 떨어져서 설정된 경우

- 인구주택조사구를 2개 이상 묶어서 설정한 조사구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되게 연결되도록 조사구가 설정되었는지 유무를 확인
- 만일 이상이 있는 조사구가 발견되었을 때 조사구가 서로 연결되도록 재설정하여 조사구변경 신청을 함

[그림 3] 인구주택조사구가 떨어져 설정된 것을 수정한 예



》》 설정된 인구주택조사구 사이에 산이나 하천 등 장애물이 끼어 있어 조사수행이 불편할 경우

- 인구주택조사구를 2개 이상 묶어서 설정한 조사구의 경우 인구주택 조사구 사이에 산이나 하천 등 장애물로 인해 조사수행이 불편하게 설정된 경우 조사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재설정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누락된 경우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특성번호가 A, 1, 2인 조사구 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구 설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사구의 위치를 확인한 후 조사관리시스템에 조사구변경 신청을 등록
- 특히 관내에 2005 인구주택총조사 시 대규모 입주나 조사구 누락 등으로 새로 생성시킨 인구주택조사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여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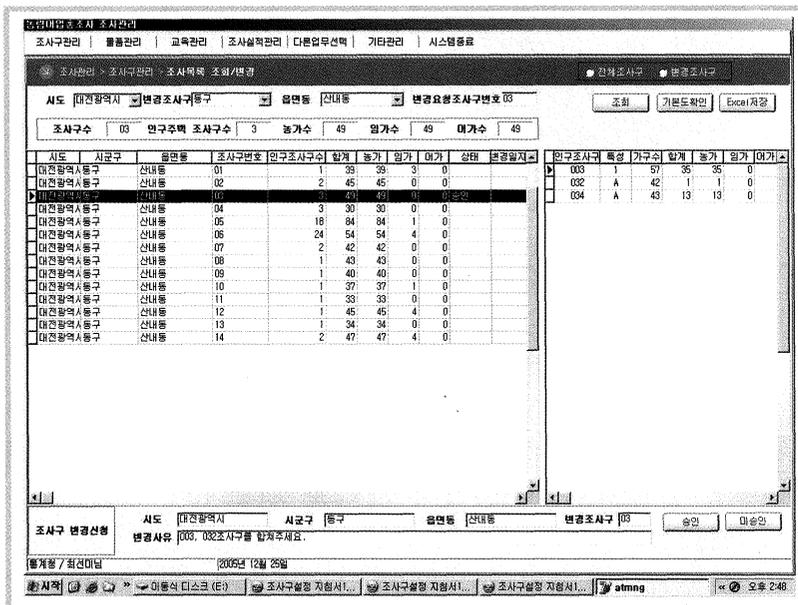
»» 삭제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포함된 경우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시 대규모의 가구가 강제 철거나 전출 등으로 인해 인접조사구로 병합되었거나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에 포함된 경우 조사관리시스템에 조사구 변경신청을 등록

♣ 조사구변경 신청방법

- 조사구변경 신청 및 승인 유무 확인은 조사관리시스템에서 함
⇒ 조사관리시스템 지침서 참고

[그림 4] 조사관리시스템에 조사구변경 신청





2. 조사 준비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이 완료되면 확정된 조사구에 대해 농림어가명부를 출력하고, 조사구별 인구주택조사구 요도를 복사하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준비를 한다.

♣ 농림어가명부 출력

- 조사관리시스템에서 관내 농림어가 명부를 조사구별로 출력하여 편철
⇒ 세부사항은 조사관리시스템 지침서를 참고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요도 편철

- 농림어가명부에 해당하는 인구주택조사구요도를 복사하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별로 편철

>>> 참고사항

- 농림어가명부에 출력되지 않는 인구주택조사구의 요도는 복사해서 편철할 필요가 없음.
 - … 조사구목록에 있으나, 농림어가명부에 출력되지 않는 인구주택조사구는 조사구내 조사대상 농림어가가 전혀 없는 조사구임
 - … 따라서 농림어가명부에 표시되어 있는 인구주택조사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되는 조사구요도를 복사해서 농림어가 조사구별로 편철하고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야 되지만, 농림어가명부에 출력되지 않는(농림어가가 없는) 인구주택조사구에 대해서는 복사할 필요가 없음



- ① 017-1, 108-1 인구주택조사구요도를 복사한다.(확대도도 복사)
- ② 인구주택조사구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다.
- ③ 맨 앞장(017-1조사구요도)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 ④ 부착된 스티커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그림 6] 조사구요도 스티커 기입예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요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번호	인 구 주 택 총 조사구 수	2	조 사 원	000
	1 2	총 매 수	5	조 사 관 리 자	000
				총 관 리 자	000
2005 농림어업총조사					

- 조사구요도 총매수는 조사구요도와 부분확대도의 매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입

3.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후 2006.2.10까지 기간중 조사구내 농림어가수의 현저한 증감이 생겨 조사구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리시스템에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요청을 한다.

♣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기간

-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후부터 2006. 2. 10까지

♣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대상 조사구

- 조사구내 농림어가수의 현저한 증감이 생겼을 경우
 -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후부터 조사구내 농림어가수가 급격히 증가되었거나 반대로 감소되어 조사구의 분할이나 병합이 불가피한 경우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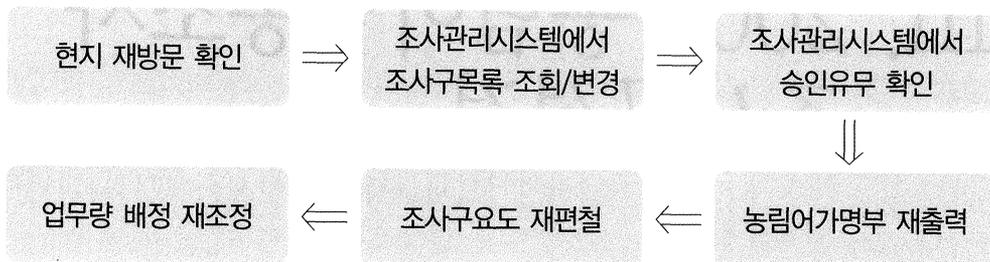
- 2005. 10. 31.까지 변동된 읍면동 경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시에 이미 반영
-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인접 읍·면·동으로부터 일부지역이 편입된 경우나 반대로 인접 읍·면·동으로 분할된 경우에도 조사구경계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 조사관할 읍·면·동은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방법

- 시군구 및 읍면동은 해당 관내에서 변동조사구에 해당하는 조사구가 발생한 경우 현지를 재방문 확인
- 조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사구 변경신청을 등록
 -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외 조사구변경신청 방법과 동일
- 조사구변경신청 조사구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농림어가명부와 조사구요도를 재편철하고 업무량 배정을 재조정

[그림 7]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절차





2005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관리 지침서

III.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1. 준비작업
2.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출력
3. 조사구 설정
4. 조사구 설정 수정·보완
5. 기본도 및 확대도 출력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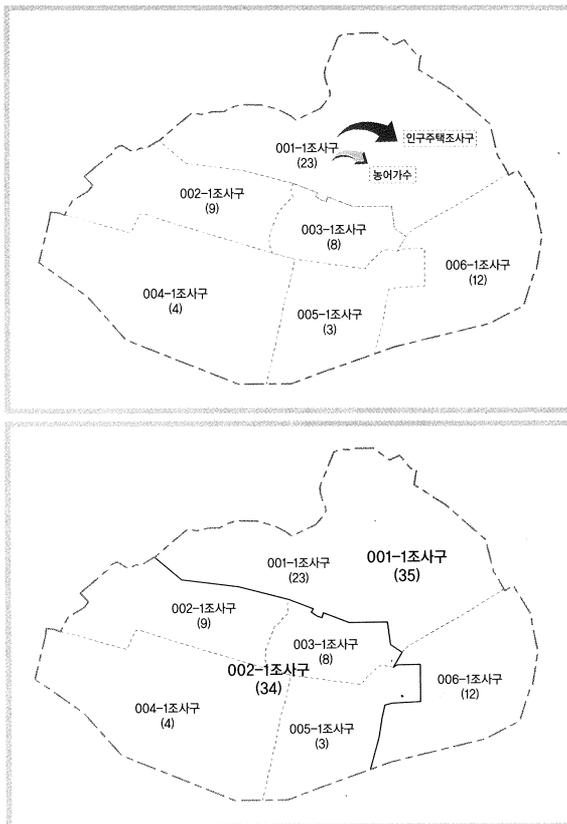
1. 준비작업

조사구설정용 GIS 프로그램과 조사구설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구설정을 자동화 함으로써 조사구 설정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조사구 설정용 GIS 프로그램 개발

- 2000 농어업총조사의 농어가수를 지리좌표 체계를 갖는 2000년 거처정보자료와 연계
- 연계한 자료를 2005 인구주택조사구 경계별로 재집계
- GIS 프로그램을 이용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기준 농어가수 40±10호 규모로 설정작업을 자동화하여 조사구 설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그림 8] 조사구 병합 전후





2.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출력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0 농어업총조사 결과
농어가수에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결합하여,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본도를 출력

♣ 농어가일람표 작성

- 2000년 농어업총조사 결과 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준으로 재정리
- 행정구역과 거처번호는 GIS 지도 상의 거처 포인트(시작번호/끝번호)와 결합시키기 위한 기준 변수

《표1》 2000년 총조사자료를 인구주택조사구별로 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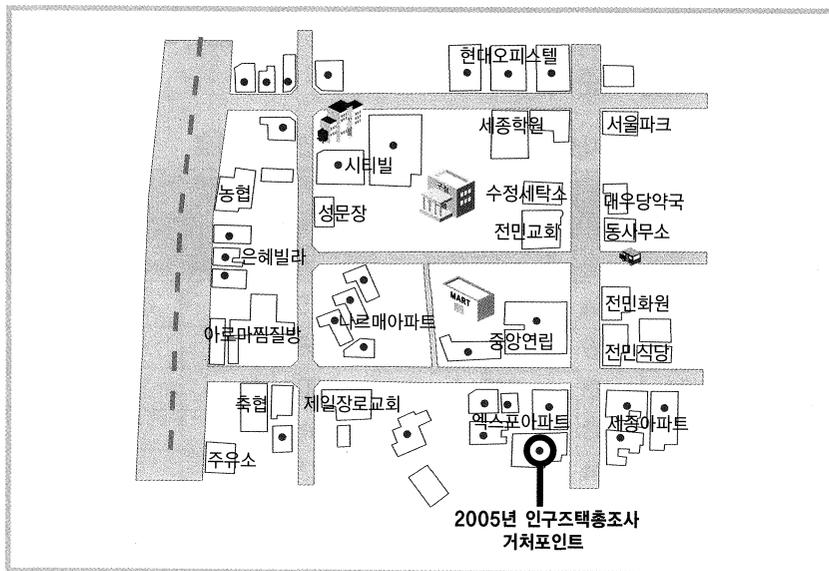
행정구역			인구주택조사구		거 처 번호	2000년 농어가 현황			
시 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특성번호		계	농가	해수면	내수면
11	020	54	025	1	025	2	1	1	-
11	020	59	041	1	028	1	1	-	-
11	020	63	015	1	020	1	-	1	-
11	020	63	087	A	101	2	1	-	1
11	020	64	024	1	012	1	1	-	-
11	040	54	073	1	027	3	1	1	1
11	040	58	049	1	022	1	1	-	-
11	040	58	050	1	008	1	-	-	1
11	040	61	010	A	021	1	1	-	-
11	040	61	046	1	046	2	1	1	-
11	040	61	047	1	008	1	1	-	-
11	040	61	085	1	012	1	1	-	-
11	040	65	059	A	047	1	1	-	-
11	040	65	100	1	010	2	1	1	-

- 1개 가구에서 농가, 해수면, 내수면에 해당할 경우 조사대상 가구를 3개 가구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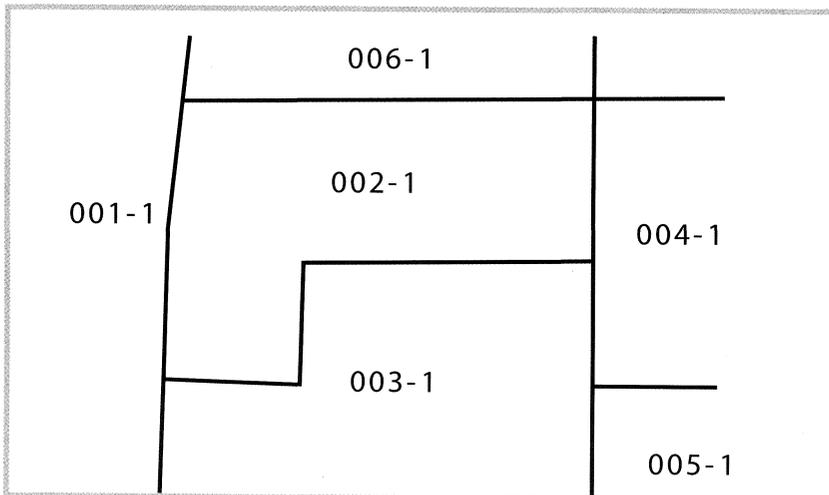
♣ GIS 기본도 작성

- 2000년 총조사에서 작성된 거처포인트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새로 설정되는 조사구 경계를 GIS(지리정보시스템) 상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재작성
 - GIS 상의 모든 거처포인트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구역/거처번호/조사구번호/기초단위구번호 정보가 부여되어 있음
 - 특히 포인트 하나에 거처가 1개 이상이 있을 경우 거처번호는 시작과 끝 거처번호의 형태로 부여

[그림 10]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거처포인트



[그림 11] 2005 인구주택조사구 조사구 경계





[그림 12] 2000 거처포인트와 2005 인구조사구 경계 결합



♣ GIS지도에서 2005 조사구경계와 2000 거처 포인트를 결합

- 조사구경계와 거처포인트를 결합한 최종 자료는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정보(행정구역, 조사구번호)와 거처번호(시작 거처번호, 끝 거처번호),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구역과 조사구번호 정보가 부여됨
- 이것을 가공하면 2005 조사구별 2000 거처포인트 자료로 정리가 가능

《표2》2005년 조사구경계와 2000년 거처 포인트를 결합한 최종자료

2000년 인구주택조사				2005년 인구주택조사	
행정구역	인구주택조사구	시작 거처번호	끝 거처번호	행정구역	인구주택조사구
3401040	002-1	54	54	3401040	002-1
3401040	002-1	55	55	3401040	002-1
3401040	002-1	56	56	3401040	003-1
3401040	002-1	57	57	3401040	003-1
3401040	003-1	1	1	3401040	003-1
3401040	003-1	2	2	3401040	003-1
3401040	003-1	3	3	3401040	003-1
3401040	003-1	4	4	3401040	004-1
3401040	003-1	5	5	3401040	004-1
3401040	003-1	6	6	3401040	004-1

♣ 농어가일람표와 거처포인터의 조사구별 결합자료

- 앞에서 작성된 농어가 일람표《표1》와 최종 자료《표2》를 각각 2000년 행정구역과 인구주택조사구, 거처포인터가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합
- 그 결과 최종적으로 조사구 설정에 필요한 2005년 행정구역, 인구주택 조사구번호, 인구주택조사구별 2000년 농어가수 집계 자료를 정리

《표3》 농어가일람표와 거처포인터의 조사구별 결합자료

2005년		2000년				X
행정구역	인구조사구	계	농가수	해수면	내수면	
3402037	001-1	27	27	-	-	3402037001-1
3402037	002-1	34	34	-	-	3402037002-1
3402037	003-1	38	38	-	-	3402037003-1
3402037	004-1	42	42	-	-	3402037004-1
3402037	005-1	52	51	-	1	3402037005-1
3402037	006-1	46	44	-	2	3402037006-1
3402037	007-1	62	62	-	-	3402037007-1
3402037	008-1	39	39	-	-	3402037008-1
3402037	009-1	42	42	-	-	3402037009-1
3402037	011-1	53	53	-	-	3402037011-1
3402037	012-1	41	41	-	-	3402037012-1
3402037	017-1	32	32	-	-	3402037017-1
3402037	020-1	17	17	-	-	3402037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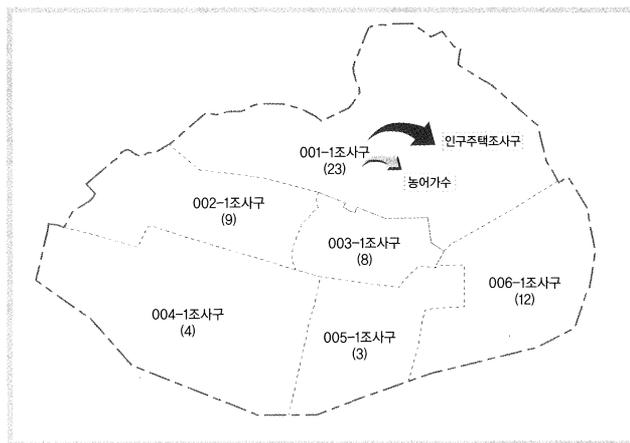
- X 변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행정구역과 인구주택조사구 번호를 결합하여 생성시킨 기본키임



♣ GIS 기본도에 농어가수 정보넣기

- 정리된 자료<표3>를 X 변수를 기본키로 하여 농어가수 정보를 GIS 지도에 삽입

[그림 13] GIS 상에서 농어가 정보 넣기



♣ 조사구병합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사구 가설정

- 조사구병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구 설정기준 농어가수인 40±10호 규모로 1차 설정
- 위 과정이 완료되면 읍면동 별로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를 출력
 - 이 때 가설정된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경계안에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구 경계가 포함되며 통리 경계도 함께 출력

<표4>1차 조사구설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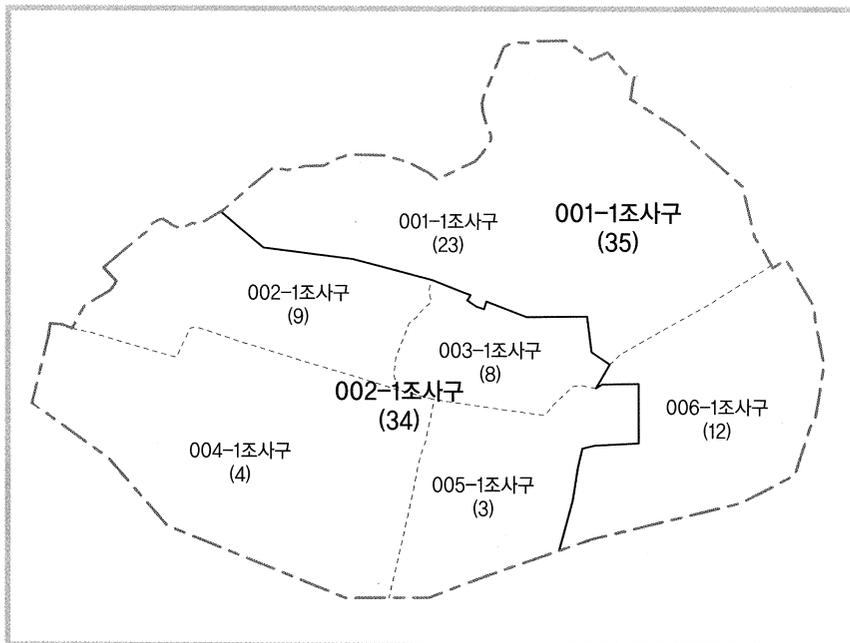
행정구역	조사구	농어가수 현황				조사구 병합내역
		합	농가	해수면	내수면	
3201011	018-1	26	25	0	1	018-1, 019-1
3201011	031-1	35	34	0	1	031-1, 032-1
3201011	044-1	33	33	0	0	044-1, 036-1
3201011	027-1	31	31	0	0	027-1, 026-1
3201011	017-1	35	35	0	0	017-1, 020-4
3201011	015-1	26	26	0	0	015-1, 016-4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행정구역	조사구	농어가수 현황				조사구 병합내역
		합	농가	해수면	내수면	
3201036	007-1	50	47	0	3	007-1, 008-1, 009-1, 011-1
3201036	014-1	49	39	5	5	014-1, 018-1, 016-A~017-A
3201034	028-1	49	40	9	0	028-1, 029-1, 033-1, 034-1

- 「조사구번호」는 병합된 조사구에서 대표 인구주택조사구번호로 임시 부여
- 「조사구병합내역」은 병합된 2005년 인구주택조사구 번호를 열거
- 「농어가수 현황」은 병합된 조사구별로 집계된 농어가수임

[그림 14] 최종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3. 조사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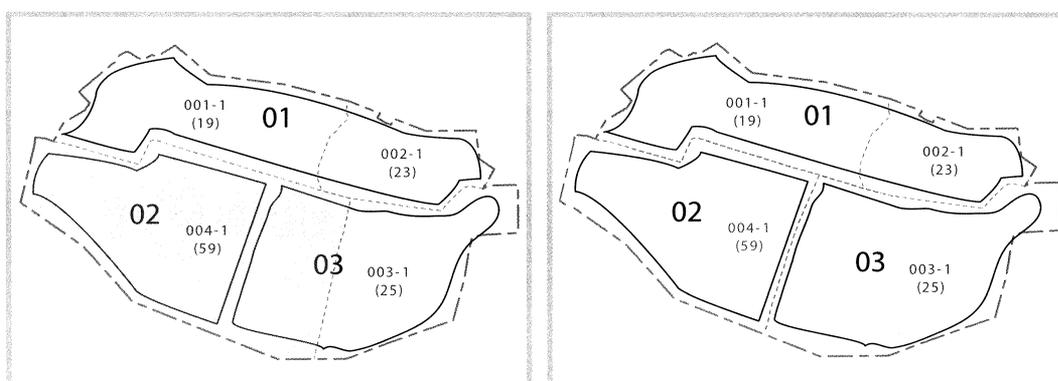
조사구설정 프로그램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이나
조사이동거리 등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사구설정용 기본도를 바탕으로 조사구 설정을 재조정

♣ 설정방법

-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를 기초로 조사구를 설정
- 이 때 조사구 병합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사구설정 시 반영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이나 조사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

♣ 사례별 조사구설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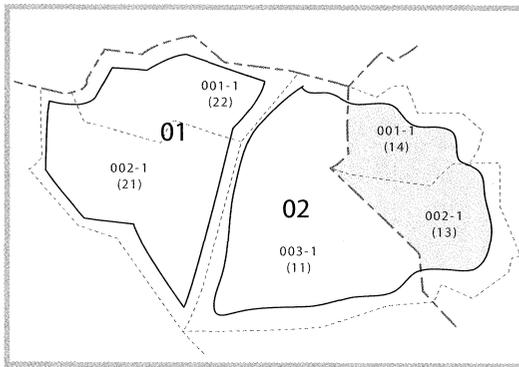
2005 인구주택조사구의 경계는 반드시 유지하며,
1개 인구주택조사구가 포함하는 농어가수가 51가구 이상이더라도
2개로 분할해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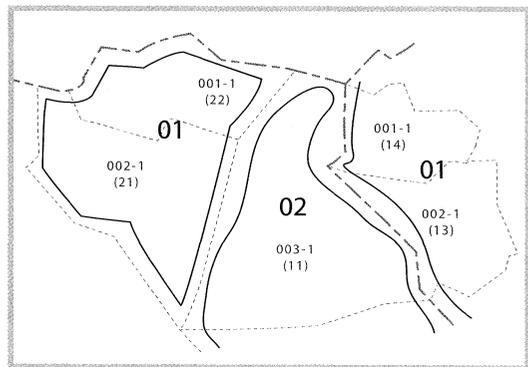
[틀린예]

[맞는예]

》》 행정 읍·면·동 경계는 반드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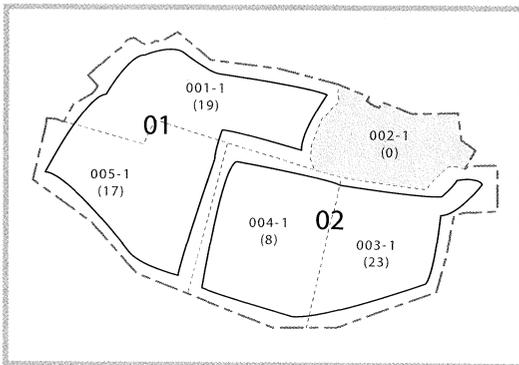


[틀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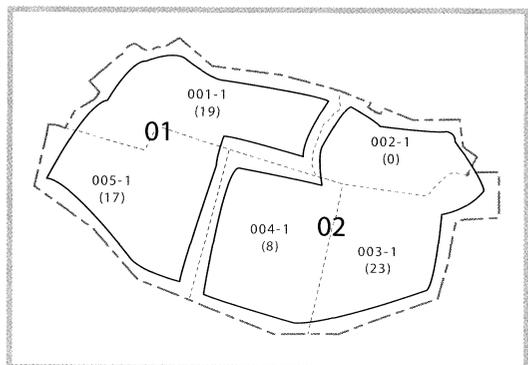


[맞는예]

》》 행정 읍·면·동 경계내 전지역이 포함되도록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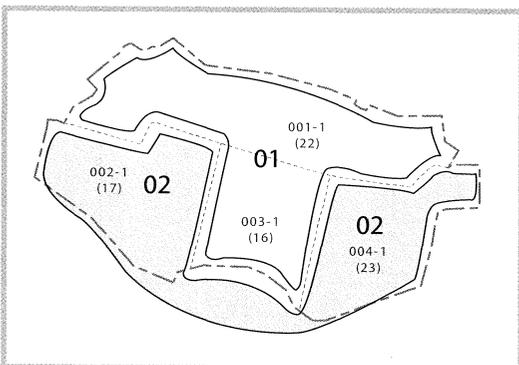


[틀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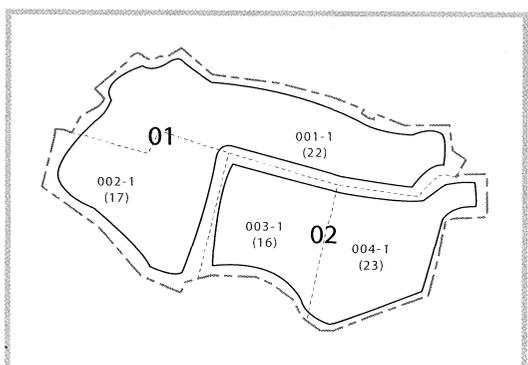


[맞는예]

》》 인구주택조사구를 2개 이상 묶을 경우 반드시 인접하도록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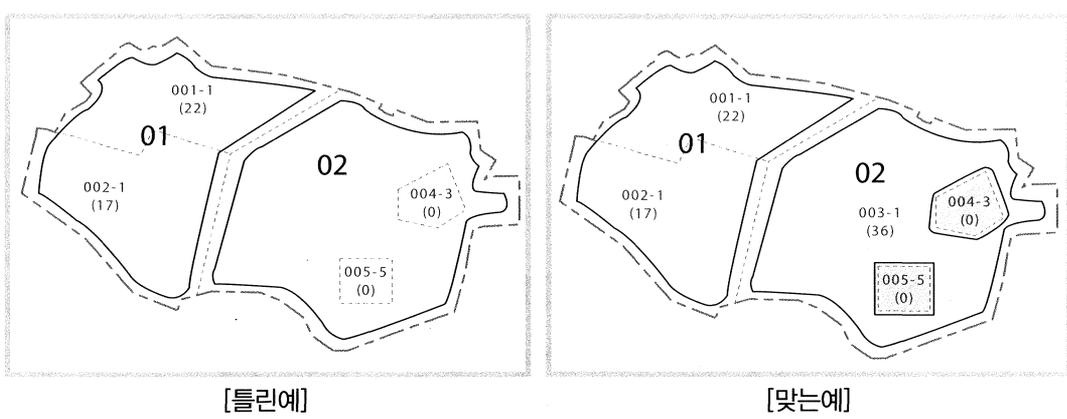
[틀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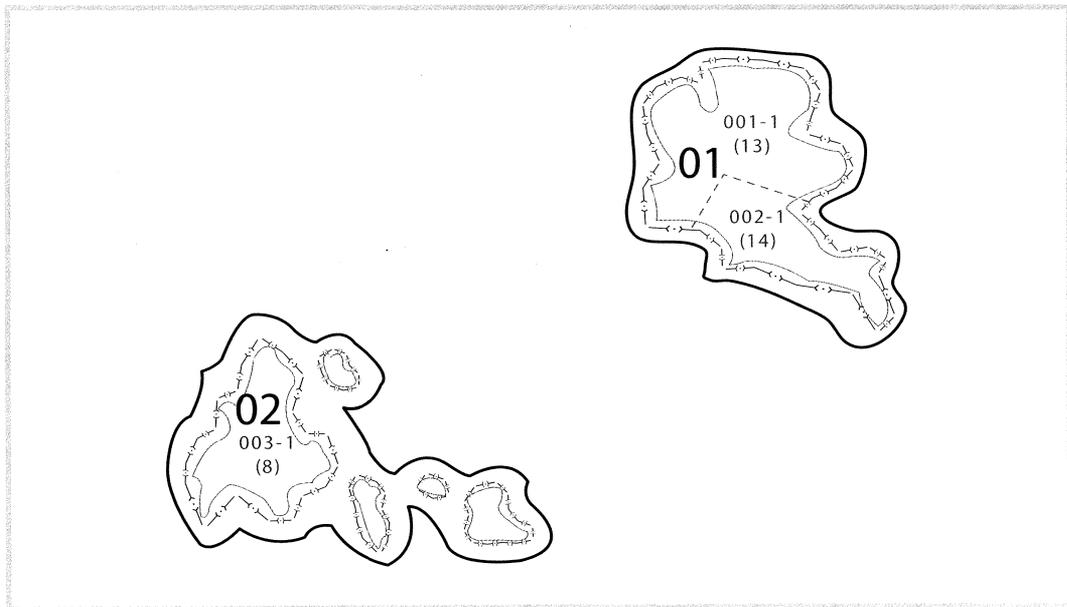
[맞는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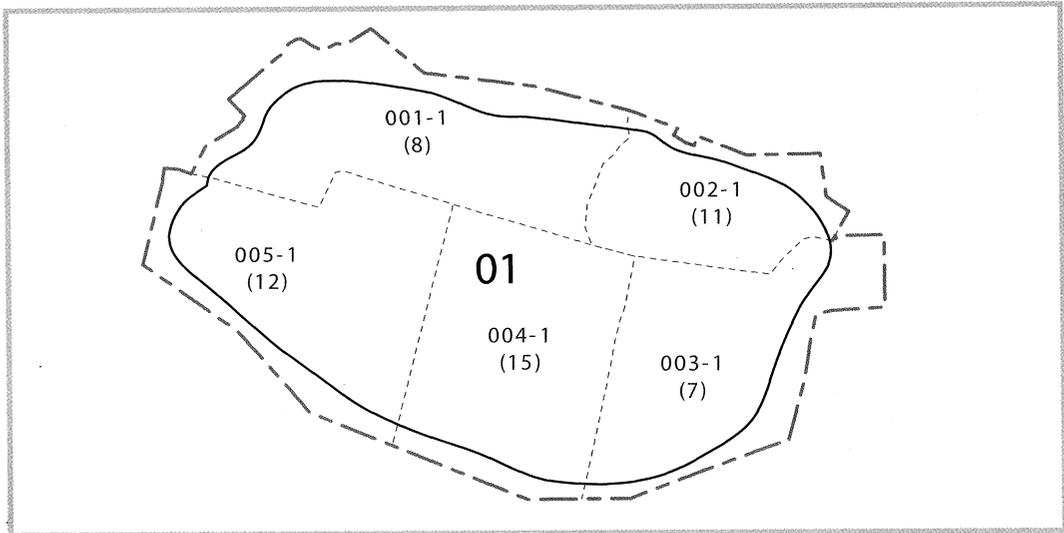
»» 인구주택조사구 중 기숙시설(특성번호:3), 특수사회시설(특성번호:4),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특성번호:5), 특별조사구는 제외



»» 산간오지 및 섬조사구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준 농어가수에 미달하여도 1개의 농어업조사구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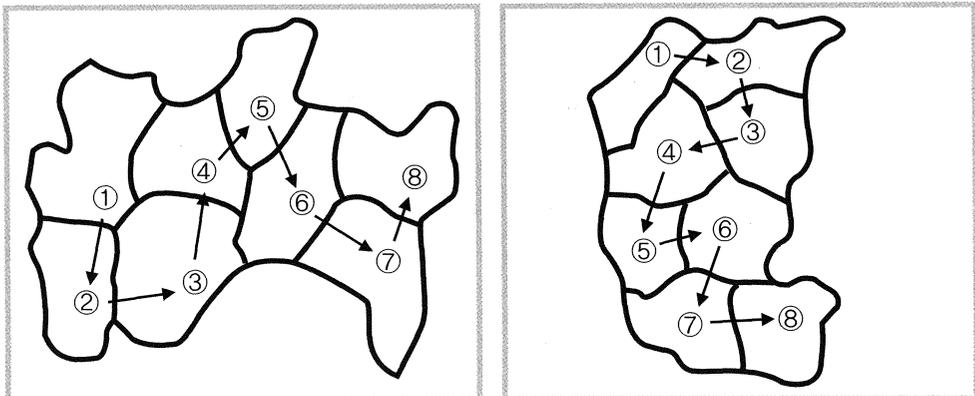
» 읍·면·동 전체 농어가수가 60호 미만인 경우 읍·면·동 전체를 1개조사구로 설정



♣ 농림어업조사구 번호 부여방법

- 농림어업조사구 번호는 2자리로 01부터 시작하여 특성번호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
- 지형의 특성에 따라 좌→우(N자형), 상→하(S자형)로 번호가 연결 되도록 부여

[그림 15] 조사구 일련번호 부여방법





4. 조사구 설정 수정 · 보완

2005. 11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조사구별
농어가수를 반영하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보완

-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농(임)어가수가 설정 조사구의 농어가수 규모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조사구에 대해 수정 · 보완
- 조사구 관리 프로그램은 인구조사구별로 2005 인구주택총조사 농(임)어가수와 비교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 조사구별 기준 농어가수규모 보완방법

》》 인구주택조사구 1개가 농림어업조사구로 설정된 경우

- 농(임)어가 수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보완없이 1개 조사구를 그대로 농림어업 조사구로 사용
- 농(임)어가 수가 30가구 미만인 경우 기준 농어가수를 고려하여 적당한 인접 조사구와 병합

》》 인구주택조사구 2개 이상이 결합하여 1개의 농림어업조사구로 설정된 경우

- 농(임)어가 수가 50가구 이상인 경우 기준 농어가수에 맞게 인구주택조사구를 분리하고, 여분의 인구주택조사구를 인접 조사구에 편입
- 반대로 30가구 미만인 경우 인접한 타 조사구에서 여분의 조사구를 흡수시켜 조정

》》 1개 읍면동의 농어가수가 60가구 미만인 경우

- 읍면동 전체가 1개 조사구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재조정하여 1개 조사구로 재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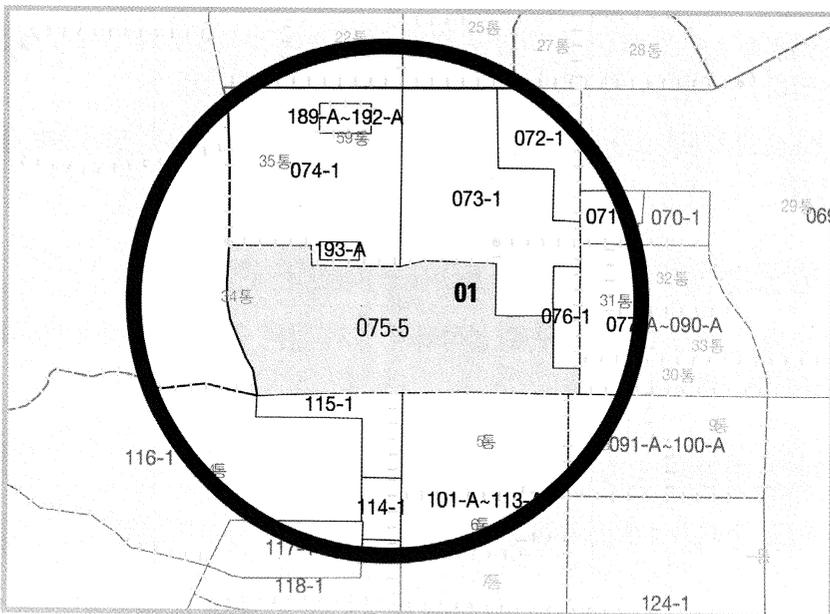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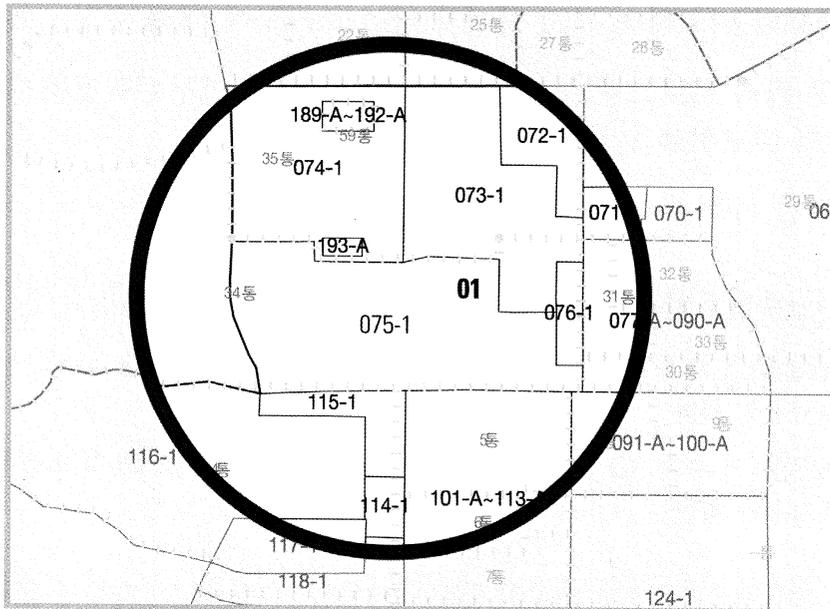
》》 1개 읍면동의 농어가수가 60가구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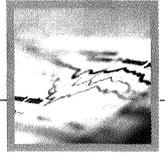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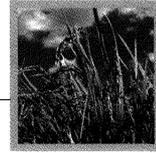
- 읍면동 전체가 1개 조사구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조사구로 재설정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번호 변경사항 보완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특성번호가 변경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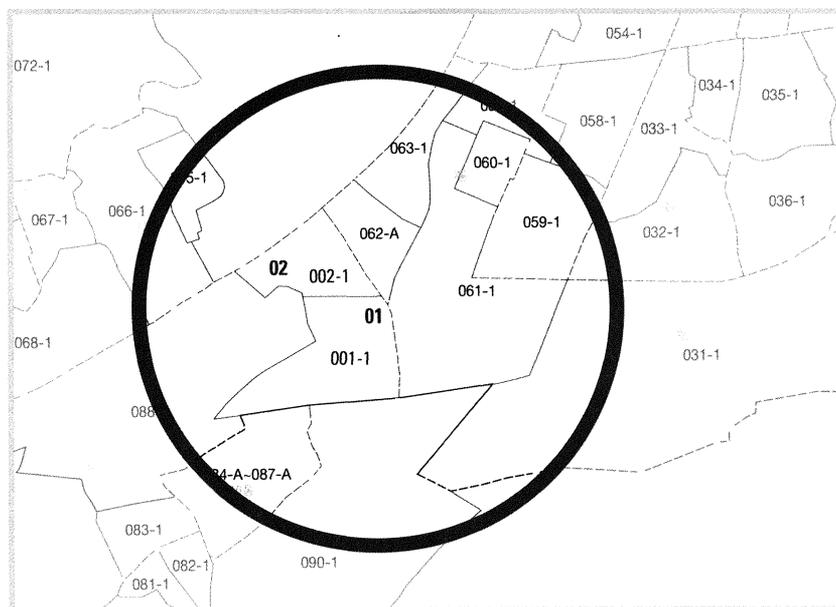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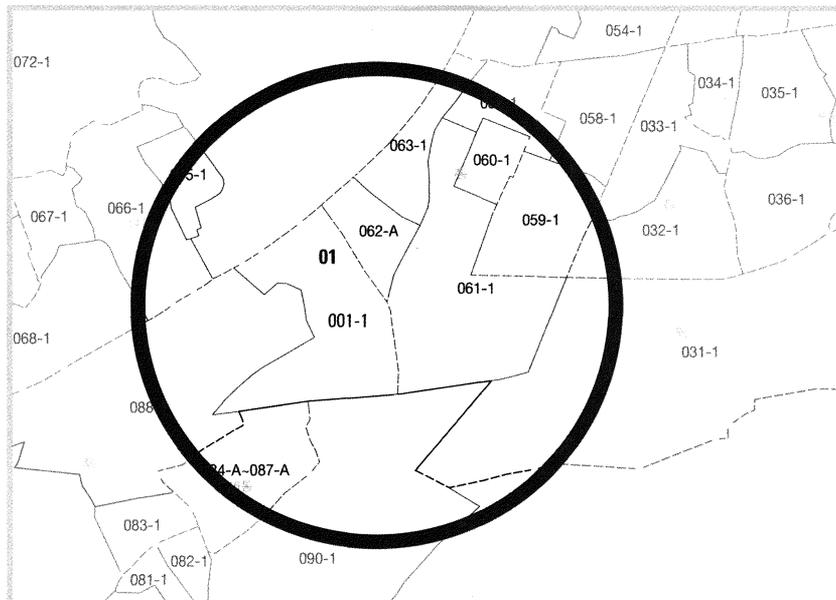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번호가 A, 1, 2에서 3,4,5로 변경된 경우 조사구 설정 대상에서 제외
- 반대의 경우는 농어가수를 고려하여 조사구 설정에 반영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신설된 경우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가구의 대량 유입 등으로 인해 신설되었거나 1개의 조사구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농어가수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구 설정에 반영
- 조사구설정기본도의 경계를 보완





5. 기본도 및 확대도 출력 배부

- 조사구 설정 수정·보완이 완료되면 읍·면·동별 조사구설정 기본도 및 확대도를 출력하여 배부
- 읍·면·동별 조사구설정 기본도 및 확대도를 PDF 파일로 생성하여 조사구 설정프로그램에 UPLOAD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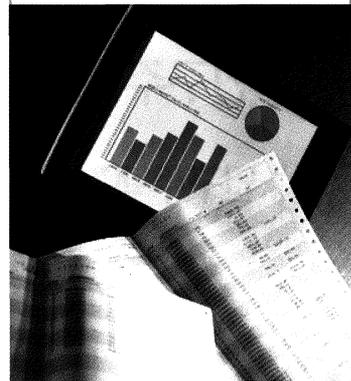
[그림 16] PDF 파일 업로드

파일명	시도/시군구/읍면동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1101051.pdf	11 010 5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101051.pdf	21 010 5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101052.pdf	21 010 5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2101053.pdf	21 010 5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대성동
2101054.pdf	21 010 5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2101056.pdf	21 010 5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2101057.pdf	21 010 5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101058.pdf	21 010 5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2101059.pdf	21 010 5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1동
2101060.pdf	21 010 6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
2131011.pdf	21 310 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2301051.pdf	23 010 5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인1 4가동
2301052.pdf	23 010 5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동
2401051.pdf	24 010 5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충강동
2501051.pdf	25 010 5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2601051.pdf	26 010 5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화성동
3101154.pdf	31 011 54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01011.pdf	32 010 11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신복읍
3301152.pdf	33 011 6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 1대성동
3401036.pdf	34 010 36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3501166.pdf	35 011 66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601058.pdf	36 010 58 전라남도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3701134.pdf	37 011 34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3701134_1.pdf	37 011 34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3801055.pdf	38 010 55 경상남도	경상남도	양산시	반송동
3801055_1.pdf	38 010 55 경상남도	경상남도	양산시	반송동
3901060.pdf	39 010 60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3901060_01.pdf	39 010 60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3901060_03.pdf	39 010 60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3901060_09.pdf	39 010 60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3901061.pdf	39 010 61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삼양동

조사구 설정결과 현황

2005.12

시도	총조사구수	농어기수별 조사구수											
		0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101이상
전 국	35,028	238	445	236	999	9,582	11,098	7,636	3,252	979	290	136	136
서울특별시	567	109	236	80	44	52	31	12	2	-	1	-	-
부산광역시	523	15	59	34	54	162	156	33	6	4	-	-	-
대구광역시	534	2	6	9	24	172	193	93	26	7	2	-	-
인천광역시	536	7	31	27	54	137	152	77	38	12	1	-	-
광주광역시	442	-	2	4	22	177	152	54	18	9	3	-	1
대전광역시	296	2	4	8	12	117	117	30	3	1	2	-	-
울산광역시	409	3	3	2	23	121	168	73	12	3	1	-	-
경 기 도	4,031	35	75	41	91	1,213	1,429	850	234	40	12	6	4
강 원 도	2,142	-	-	2	40	691	705	475	174	42	11	2	-
충 청 북 도	2,188	-	1	1	59	656	755	485	193	33	4	1	-
충 청 남 도	4,097	3	6	1	71	983	1,285	1,007	490	153	44	24	30
전 라 북 도	3,225	24	4	5	97	813	1,001	770	347	108	32	17	7
전 라 남 도	5,085	1	-	10	145	1,087	1,467	1,216	675	260	89	55	80
경 상 북 도	5,554	34	11	6	116	1,598	1,800	1,280	528	146	30	4	1
경 상 남 도	4,339	3	7	5	128	1,261	1,336	955	417	141	48	26	12
제 주 도	1,060	-	-	1	19	342	351	226	89	20	10	1	1



2005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관리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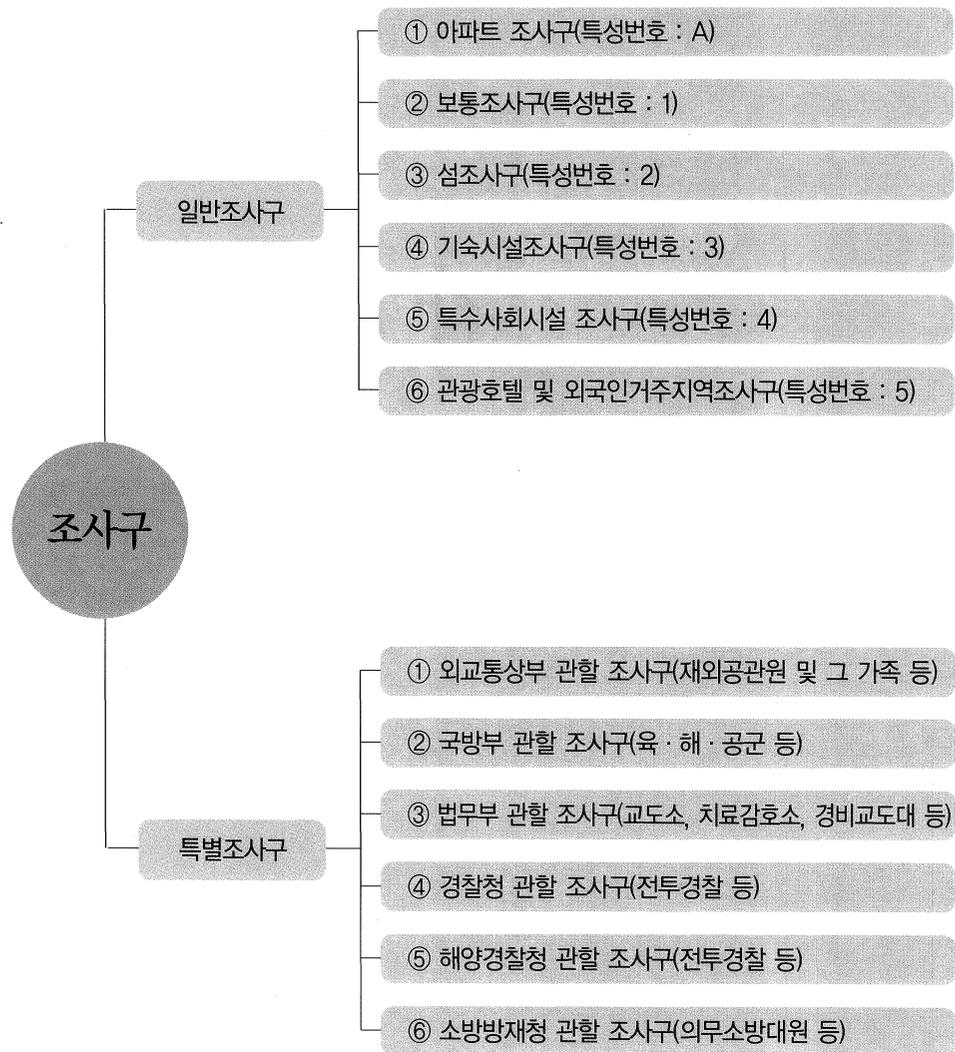
참 / 고 / 자 / 료

1. 인구주택조사구의 종류 및 설정기준
2. 거처와 가구의 구분
3.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연혁

1. 인구주택조사구의 종류 및 설정기준

●● 인구주택조사구의 종류

▶ 조사구설정은 일반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특별조사구는 조사구 설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참고자료

● 조사구 설정기준

- ▶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조사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평균 64가구 범위 (64±20가구)내에서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합니다.
- ▶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조사구는 시설단위로 조사구를 설정합니다.
- ▶ 외국인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지역에 대해 설정합니다.

1.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A)

아파트조사구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이상의 총 가구수가 40이상이 될 때 설정하는 조사구

- ▶ 상가아파트, 독신자아파트(사원, 공무원아파트 등) 등도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 규모가 적은(40가구 미만) 아파트는 인접한 동(棟)과 통합하고, 규모가 큰 경우 (90가구 이상)는 2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합니다.
- ▶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기준으로 복도식 아파트는 층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및 건물 등은 인접한 아파트 동(棟)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 주택가 또는 외딴지역에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를 합하여도 4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조사구(특성번호:1)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그림 1〉
계단식과 복도식
아파트의 조사구
설정 예

005-A (60)								006-A (6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009-A (60)				008-A (60)				007-A (60)			
								상가																			

[계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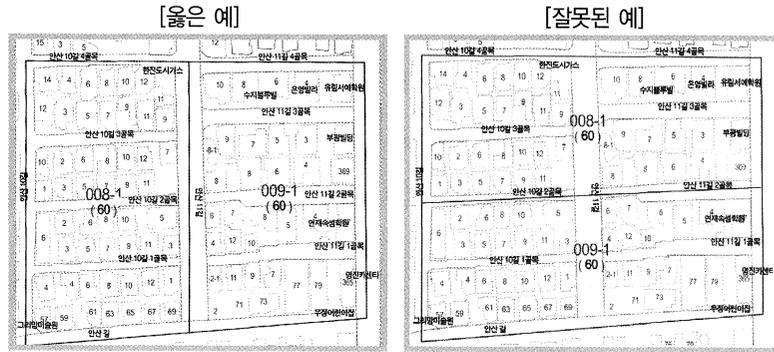
[복도식]

2. 보통조사구(특수번호: 1)

보통조사구란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또는 행정 통·리 경계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 1개 조사구당 통상적으로 평균 64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 가구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한 64±20가구 범위내에서 설정합니다.
- ▶ 보통조사구는 반드시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대하천, 대도로 등은 가능한 한 조사구 경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 ▶ 특히, 도시지역인 경우 대하천, 대도로를 가로 질러서 조사구가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오피스텔, 가족이 거주하는 사원주택 등은 보통조사구로 설정합니다.(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림 2〉
도시지역의
조사구설정 예



3. 섬조사구(특성번호:2)

섬조사구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 유인도 또는 무인도가 군집되어 있는 섬지역은 거주가구수와 거처수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섬을 묶어 1개의 섬조사구로 설정합니다. 단, 해상교통이 불편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섬의 경우에는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더라도 한 개의 섬을 하나의 섬조사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군단위 이상의 청사가 소재하는 섬과 교량,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강화도 등)은 육지로 간주하여 보통조사구로 설정합니다.

4.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3)

기숙시설조사구란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단위로 설정하는 조사구

- ▶ 조사구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 고시원, 고시텔, 코쿰하우스 등과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으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합니다. 단, 실버타운(silver-town) 등과 같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건물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보통조사구로 설정
- ▶ 기숙시설 내에 거주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동(棟), 층 또는 호·실 단위로 기숙시설을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정합니다.
- ▶ 단독주택 등에서 하숙업을 하거나, 실제로 기숙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인 가구를 제외한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으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합니다.(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야 함)
- ▶ 사원아파트의 독신자 숙소가 회사내에 위치하면 기숙시설조사구로, 회사밖에 위치하면 아파트조사구로 설정합니다.

5.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4)

특수사회시설조사구란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시설 단위로 설정하는 조사구

- ▶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지역은 보통조사구(특성번호:1)로 분류하여 설정합니다.
- ▶ 아동상담소, 아동직업보호소, 조산소, 아동입양위탁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등 비수용시설은 특수사회조사구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단, 특수사회시설이지만 시설 내에서 관리인가구 또는 모자원과 같이 개별적으로 취사, 취침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일반가구로 파악합니다.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되는 수용시설의 사례〉

-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고아원, 보육원, 희망원, 영아원,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양로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맹·농아시설, 정신장애자 시설, 지체부자유자 등의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 * 특수병원, 수용소
 - 정신병원, 결핵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전염병환자 수용소, 종교단체 등
- * 기타
 - 윤락여성 직업보도를 위한 수용시설 등 상기 사항에 준하는 수용시설

6.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5)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란 외국인이 투숙한 관광호텔과 20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 또는 10가구 이상의 외국인 가구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조사구

- ▶ 관광호텔은 3등급(무궁화 2개)이상인 경우에만 호텔단위로 「관광호텔조사구」로 설정하고, 3등급 미만(무궁화 1개)의 관광호텔, 여관(모텔)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 기숙시설내의 외국인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외국인 조사구(특성번호:5)로 설정합니다.
- ▶ 외국인이 20인 미만 또는 외국인 가구가 10가구 미만이거나 한국인 가구와 섞여서 거주하는 지역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 1인 가구 또는 혈연가구가 숙박하고 있는 간이숙박소는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2. 거처와 가구의 구분

1. 거처의 구분

▶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거처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주택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에 주택시설을 갖추어 살고 있는 집)
	주택 이외의 거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피스텔 (사무실겸용 주택) 2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3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4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5 기타

(1) 주택

▶ 주택이란 한 가구 이상이 살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1 영구건물이어야 하고
- 2 부엌과 1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 3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 4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단독주택 : 통상 한가구가 살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습상 소유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 : 한 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며, 각 구획마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단독주택 : 주거용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 참고자료

2. 아파트

-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90년 이전은 4층 이상)의 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상가아파트 포함)을 말합니다.

- 아파트 단지내에 4층이하의 동(棟)이 있는 경우도 아파트로 봅니다.

3. 연립주택

-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 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고 동(棟)당 건축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주택(4층이하의 빌라, 맨션 포함)을 말합니다.

4. 다세대주택

-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 주택으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고 동(棟)당 건축면적이 200평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다른점

「다세대 주택」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단독주택」과 다릅니다.

☞ 다가구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거처로 보는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각각의 세대를 주거단위로 하여 거처로 봅니다.

5. 비주거용 건물(상가·공장·점포·여관 등)내 주택

-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영구건물,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주택이외 거처

- ▶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로서 사람이 살고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1. 오피스텔

- ▶ 사무실이지만 숙박이 가능한 거처를 말합니다.

2.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 단,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으로 봅니다.

>>> 참고자료

3.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 기술사, 수녀원, 양로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4.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 ▶ 여기에는 판잣집, 천막집, 비닐하우스, 움막, 암자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5. 기타

- ▶ 업체의 잠만 자는 방, 건설 공사장의 임시 막사, 동굴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 이외의 거처가 해당됩니다.

2. 가구의 구분

(1) 가구의 개념

- ▶ 가구란 혈연 또는 비혈연을 불문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2) 가구의 종류

1. 일반가구

-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 가족과 가족이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 1인 가구

2. 집단가구

-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특성번호 1, 보통조사구)
- ▶ 집단 시설 가구
 - 기숙사, 수녀원, 사찰 등의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가구(특성번호3, 기숙시설조사구)
 -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등의 특수사회시설에 2인 이상의 수용되어 있는 시설가구
(특성번호4, 특수사회시설조사구)

3.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연혁

1. 조사구 분류방법

□ 농업총조사

- 1980년 총조사는 도시지역과 낙도지역을 특수조사구로 구분
- 1990년과 1995년은 인구주택 조사구의 농가비율을 기준으로 농가비율 50% 이상은 일반조사구, 미만은 특수조사구로 구분
- 2000년은 농어업조사구로 통합하여 설정

□ 어업총조사

- 90년, 95년 조사에서 해면조사구를 일반·특별조사구로 분리
... 특별조사구는 낙도 또는 대도시지역으로 어가 50개 내외로 설정

□ 농어업총조사

- 2000년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를 합하여 농어업총조사 조사구로 통합
... 특별 또는 특수 조사구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낙도 또는 대도시 지역 조사구 설정 시 적정 고려

□ 농림어업총조사

- 2005년 농업, 임업, 어업 총조사를 통합하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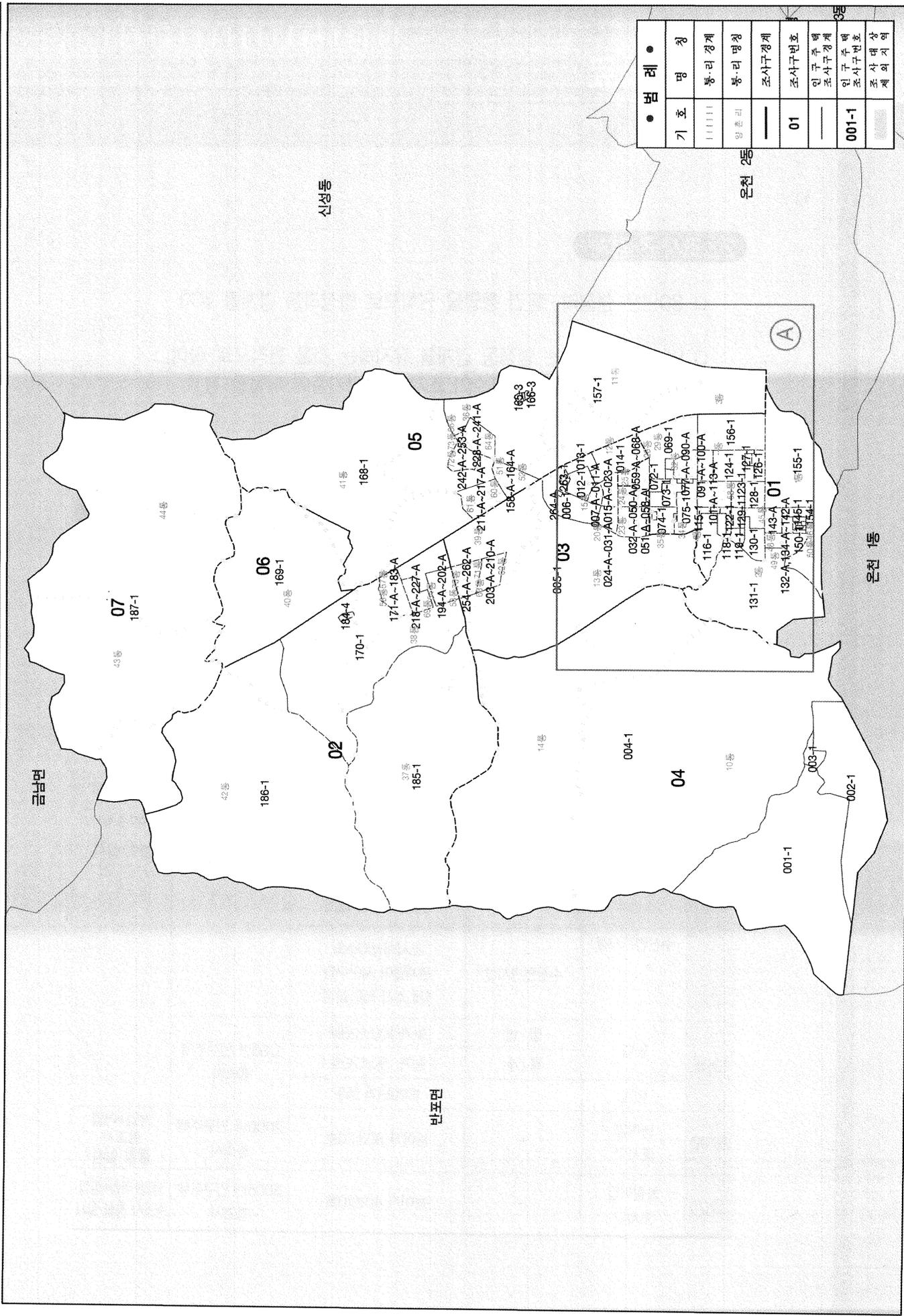
2. 조사구 경계

- 80년은 행정리·동간 통합을 원칙으로 법정리동 경계를 유지
- 90년 이후부터는 행정동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동당 조사대상 가구수가 조사구 설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1개동 전체를 1개 조사구로 설정

《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방법 변동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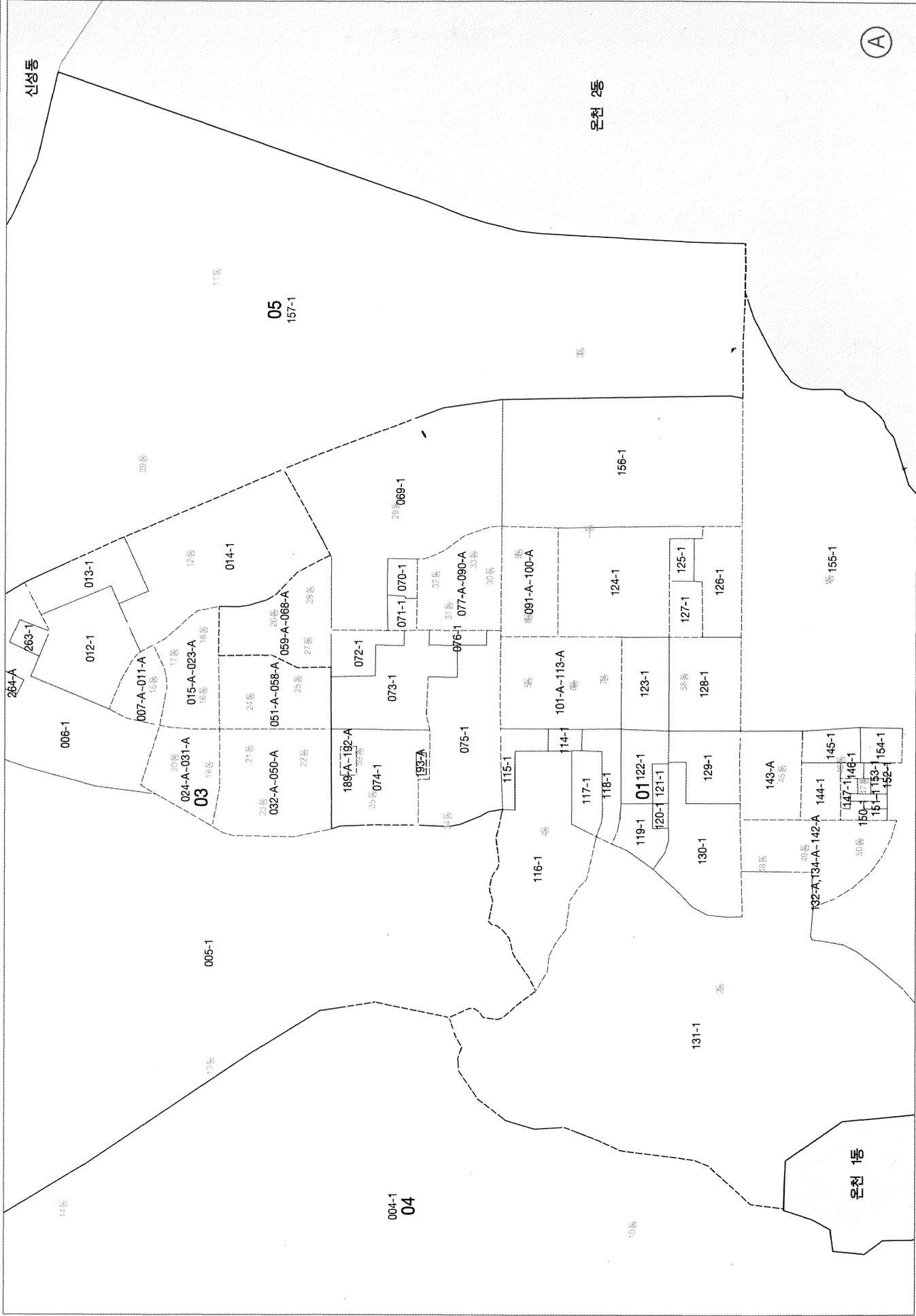
연도별	구분	조사구 종류	설 정 방 법	기초 조사구	비 고
1980	농업	일반	농가 120가구 내외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별도 실시
		특수	농가 50가구 내외		
	어업	해면어업	어가 100가구 내외	표준행정구역분류	
		내수면 및 수산제조 가공업체	조사대상체 50개 내외		
1990	농업	일반	농가 100±20호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	
		특수	농가 50±20호		
	어업	해면 어업	일반 특수		어가 60-100가구 어가 30-60가구
		내수면	어가 50개 내외		
	수산연관시설	수산제조업체	읍면동 순위에 따라 50개 사업체 내외	조사대상체수와 관계없이 시군구당 1개 조사구로 설정	
		수산연관시설			
1995	농업	일반	농가 100±20호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특수	농가 50±20호		
	어업		1990년과 동일		
2000	농어업 조사구	-	농어가 80±20호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어업 총조사 통합 실시
2005	농림어업 조사구	-	농어가 40±10호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어업+임업 총조사 통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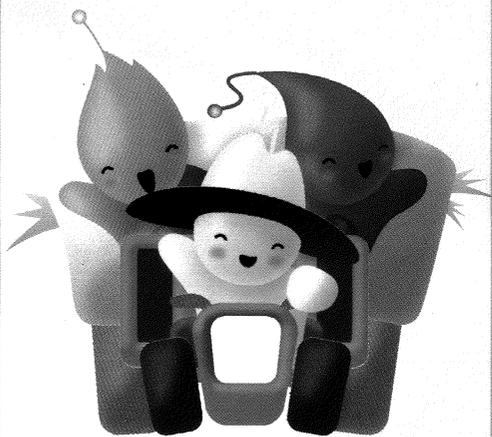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2504059) 기본도



● 범례 ●

기호	명칭
	통·리 경계
양호리	통·리 명칭
—	조사구경계
01	조사구번호
—	인구주택조사구경계
001-1	인구주택조사구번호
	조사대상 제외 지역





함께하는 밝은미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무료전화 : 080-789-2005 ■ FAX : 042481-2473 ■ <http://www.acensus.go.kr>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11-(1)

임곡동

비아동

08
031-1

06

07
030-1

028-1

027-1

월곡2동

운남동

남면

002-1

01
001-1

035-1

006-3

008-3

009-3

012-3

011-1

013-1

014-3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11-(2)



임곡동

비아동

027-1

08

031-1

06

028-1

07

030-1

029-

월곡2동

운남

위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22, 23

임곡동

비아동

월곡2동

운남



남면

002-1 01 001-1

03

035-1

4동

05

046-3

048-3

010-3

019-3

009-3

012-3

011-1

013-1

014-3

016-1

019-3

08동

027-1

09동

032-1

14동

11동

10동

15동

08

031-1

06

030-1 07

028-1

17동

029-1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24, 25, 26

임곡동

비아동

월곡2동

15동 08
031-1

13동 06

030-1 07

028-1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31-(2)

임곡동

비아동

08
031-1
15동

07
030-1
16동

06
13동

월곡2동

운남동

남면

002-1
38동

01
001-1
18동

03
035-1
45동

016-3
007
016-3

010-3
011-1

013-3
013-1

014-3
011-1

015-3
012-3

019-3

08동

027-1
9동

032-1
14동

026-3
11동

10동

028-1
17동

029-1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32

임곡동

비아동

08
031-1

06

07
030-1

028-1

월곡2동

운남동

남면

002-1

001-1

035-1

006-3

007

008-3

011-1

013-1

014-3

019-0

019-1

020-1

021-1

022-1

023-1

024-1

025-1

026-1

027-1

028-1

029-1

030-1

031-1

032-1

033-1

034-1

035-1

036-1

037-1

038-1

039-1

040-1

041-1

042-1

043-1

044-1

045-1

046-1

047-1

048-1

049-1

050-1

051-1

052-1

053-1

054-1

055-1

056-1

057-1

058-1

059-1

060-1

061-1

062-1

063-1

064-1

065-1

066-1

067-1

068-1

069-1

070-1

071-1

072-1

073-1

074-1

075-1

076-1

077-1

078-1

079-1

080-1

081-1

082-1

083-1

084-1

085-1

086-1

087-1

088-1

089-1

090-1

091-1

092-1

093-1

094-1

095-1

096-1

097-1

098-1

099-1

100-1

101-1

102-1

103-1

104-1

105-1

106-1

107-1

108-1

109-1

110-1

111-1

112-1

113-1

114-1

115-1

116-1

117-1

118-1

119-1

120-1

121-1

122-1

123-1

124-1

125-1

126-1

127-1

128-1

129-1

130-1

131-1

132-1

133-1

134-1

135-1

136-1

137-1

138-1

139-1

140-1

141-1

142-1

143-1

144-1

145-1

146-1

147-1

148-1

149-1

150-1

151-1

152-1

153-1

154-1

155-1

156-1

157-1

158-1

159-1

160-1

161-1

162-1

163-1

164-1

165-1

166-1

167-1

168-1

169-1

170-1

171-1

172-1

173-1

174-1

175-1

176-1

177-1

178-1

179-1

180-1

181-1

182-1

183-1

184-1

185-1

186-1

187-1

188-1

189-1

190-1

191-1

192-1

193-1

194-1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202-1

203-1

204-1

205-1

206-1

207-1

208-1

209-1

210-1

211-1

212-1

213-1

214-1

215-1

216-1

217-1

218-1

219-1

220-1

221-1

222-1

223-1

224-1

225-1

226-1

227-1

228-1

229-1

230-1

231-1

232-1

233-1

234-1

235-1

236-1

237-1

238-1

239-1

240-1

241-1

242-1

243-1

244-1

245-1

246-1

247-1

248-1

249-1

250-1

251-1

252-1

253-1

254-1

255-1

256-1

257-1

258-1

259-1

260-1

261-1

262-1

263-1

264-1

265-1

266-1

267-1

268-1

269-1

270-1

271-1

272-1

273-1

274-1

275-1

276-1

277-1

278-1

279-1

280-1

281-1

282-1

283-1

284-1

285-1

286-1

287-1

288-1

289-1

290-1

291-1

292-1

293-1

294-1

295-1

296-1

297-1

298-1

299-1

300-1

301-1

302-1

303-1

304-1

305-1

306-1

307-1

308-1

남면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임곡동

비아동

33,34



월곡2동

원남



남면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임곡동

비아동

36



032-1
14동

15동
08
031-1

06

030-1
07

13동
028-1
17동

월곡2동

윤남동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임곡동

비아동

37



남면

002-1

001-1

01

03

035-1

4동

006-3

007

008-3

009-3

010-3

011-1

012-3

013-3

014-3

8동

027-1

9동

032-1

14동

026-3

7동

15동

08

031-1

06

07

030-1

028-1

17동

월곡2동

운남동

029-1

SIC5

COMPACT
disc

200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도



38

농림부
농업정책국

AIC3

DOUBLE
D5C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설정 목록



OST
LVS100

2005



2005 농림어업총조사



2005
농림어업총조사

농수산물 통계과
2005-700 (서울특별시 서구 신촌동 130 동원빌딩 3층)
TEL. (042) 481-2286 FAX. (042) 481-2473
http://www.knscensus.go.kr



함께하는 밝은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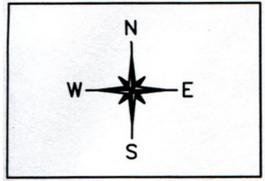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재지	조사구번호	가구수
경기	이천	장호원		001-1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조사구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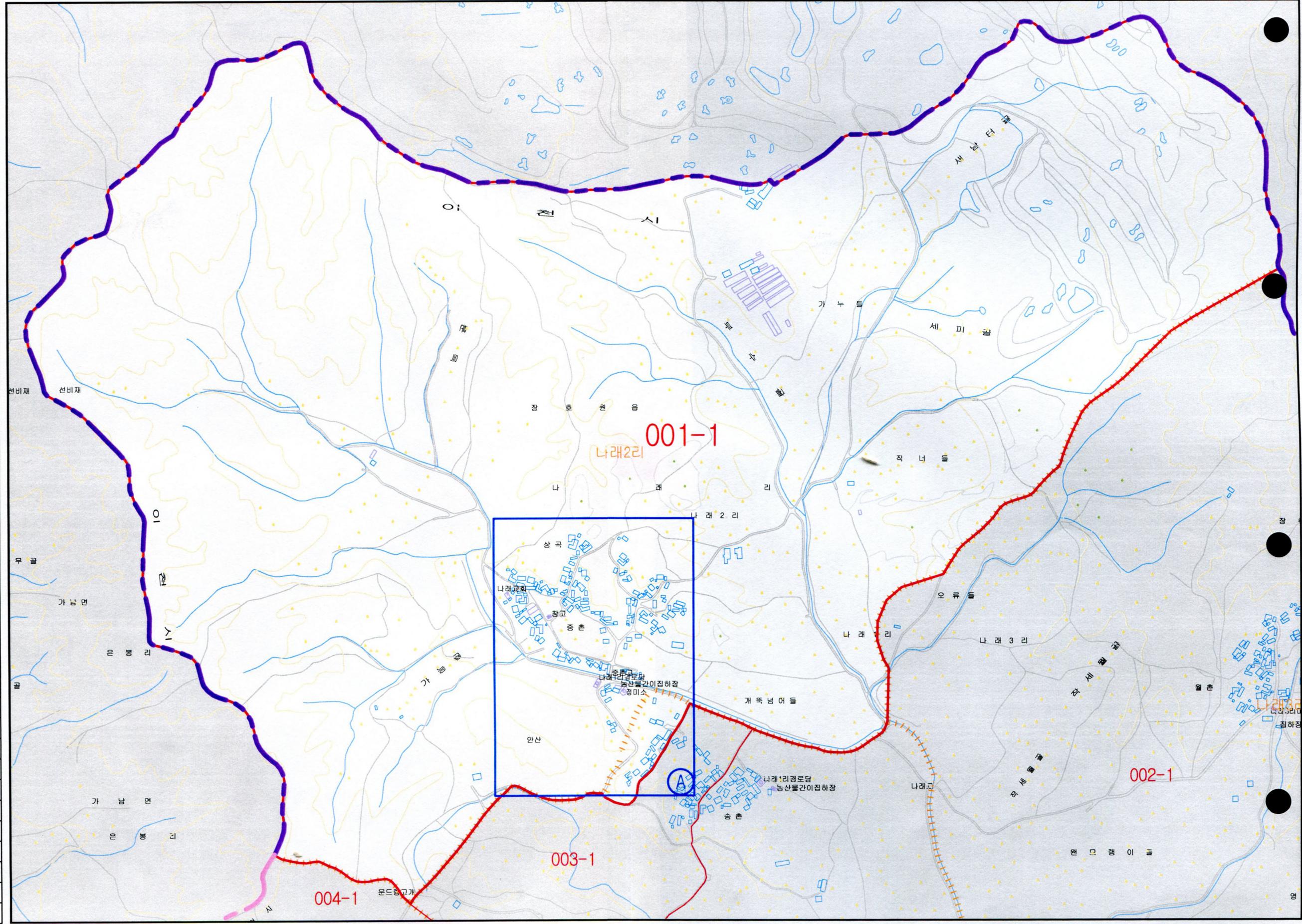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번호	인구주택총조사구수	조사원
<input type="text"/>	총매수	조사관리자
		총조사관리자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요도 매수	
조사구요도	1
부분확대도	1
출력축척	1:6839



범례

기호	명칭
	시도경계
	시군구경계
	읍면동경계
	통리경계
	조사구경계
001-1	조사구번호
(5-1)	아파트 일련번호
(15)	연립 / 다세대 일련번호
	도로
	소로
	철도
	담장
	주거건물
	아파트
	연립
	기타건물
	논/밭
	과수원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시장
	교회, 성당
	절
	주유소
	공장
	일반병원
	약국
	우체국
	학교
	도서관
	소방서
	파출소



조사구요도

2005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조사구요도

시·도	<input type="text"/>
-----	----------------------

시·군·구	<input type="text"/>
-------	----------------------

권중	<input type="text"/>	권
----	----------------------	---

행정구역	시	도	시군구	총	권	중	권	매
행정구역 부 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읍면동명	조사구수	매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읍면동명	조사구수	매 수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읍면동명	조사구수	매 수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시군구	장(인)
-----	------

조사구요도

시·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시·군·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input type="text"/> 권	<input type="text"/> 중	<input type="text"/> 권
------------------------	------------------------	------------------------



2005 농림어업조사

농림어가조사구요도

행정구역	시	도	시군구	총	권	중	권	매
행정구역 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읍면동명	조사구수	매	수	읍면동명	조사구수	매	수	읍면동명	조사구수	매	수
1				14				27			
2				15				28			
3				16				29			
4				17				30			
5				18				31			
6				19				32			
7				20				33			
8				21				34			
9				22				35			
10				23				36			
11				24				37			
12				25				38			
13				26				39			

시군구	장(인)
-----	------

조사구요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번호	인구주택 총조사구수		조사원	
	□ □	총매수		조사관리자	
				총조사관리자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요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번호	인구주택 총조사구수		조사원	
	□ □	총매수		조사관리자	
				총조사관리자	
	 2005 농림어업총조사				